

형은 눈살을 찌푸리며 집안으로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를 않았다. 무슨 여자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라고 화를 내면서 근 1개월간 형수를 만나지 않고 화를 풀지 않아 두분의 혼사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적이 있다. 송충이 한 마리-.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송충이 한 마리 밟아 죽이지 않는 착하고 여린 형이 어떻게 일생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어야 하는 간첩일 수 있겠는가?

형은 개인의 사유재산제도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고도의 자본주의체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고도의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는 민주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법인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이셨다. 형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소신과 신념은 그 누구보다 확고하였으며, 그것이 형의 학문적 사상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어찌 공산주의자일 수 있겠는가? 공산사회가 되면 형이야말로 제일 먼저 부르주아사상이 투철하고 교화가 절대 불가능한 인텔리계 층으로 지목되어 최우선적으로 숙청될 분이 아닌가?

서울법대 교수, 법학박사, 날로 상승되어 가는 교수로서의 명예, 성숙되어 가는 학문의 경지, 완성되어 가는 저서-. 이러한 형님이 무엇이 답답해 공산주의자가 되었겠는가? 부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하버드에 가셨을 때 그대로 미국에 정착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권유를 뿐만 아니라 귀국하신 나의 형, 노랑머리 속에서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돌아가서 법대생들의 배움의 의지에 불타는 또랑또랑한 눈망울 앞에 서는 것만이 내 소망이며 사명이라면서 뿌리치고 귀국한 사람이 어찌 간첩일 수 있겠는가?

언젠가 나는 형집에서 지나간 일본 영화 잡지 속에서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있었다.

형이 서재에서 나와 「공부는 않고 무엇을 보는가」하면서 웃으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형은 그 영화를 이미 오래 전에 외국에서 보았다는 것이었다. 나와 형수는 형에게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험했다. 「스파르타쿠스」의 아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는 「스파르타쿠스」에게 그의 아들을 쳐들어 보이면서 「It's your Son! It's free!」라고 말하는 장면을 말씀 하시면서, 형님의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니 결국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Free！」, 자유를 말하면서 불타던 그 눈길, 그 뜨거운 눈물, 그 영원한 자유인이 공산주의자일 수 있으며 간첩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형제가 모여서 흥에 겨우면 그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말하자면 우리 집안의 18번 이야기라고 할까.... 천 번을 더 들었을 그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우리를 즐겁고 자랑스럽게 하며, 나라에 대한 결의를 다짐케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6·25 당시 큰형과 둘째 형(최종길 교수)이 같이 남으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다. 둘째형은 당시 인천중학교 학생으로서 빽빽 머리였으므로 교복을 입고 교모를 쓰고 피난길에 나섰다. 별안간 비행기가 나타나 피난민 대열에 대고 기총소사를 했다.

그런데 둘째형은 그 소란 통에 교모를 떠버리고 말았다. 큰형은 「빨리 가서 모자를 찾아 쓰고 와라. 모자가 없으면 너는 빽빽 머리라 인민군으로 몰려 총살당한다」고 호통을 쳤다. 그때만 해도 어렸던 둘째형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신음하는 아비규환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모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텔끝만치도 없었다. 둘째형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다.

큰형은 둘째형의 뺨을 철썩 때렸다. 「빨갱이로 몰려 죽기 전에 어서 안 갔다와?」 뺨을 두어 차례 맞은 둘째형은 하는 수 없이 한참이나 거슬러 올라가 시체와 부상자 사이에서 벌벌 떨며 가까스로 교모를 찾아 쓰고 왔다. 그 모자 덕분인지 두 형은 여러 검문소를 오해

없이 통과하여 부산까지 피난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들이 들어서는 하나도 재미없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 그러나 우리 형제에게는 천번을 더 들어도 새롭고, 그때마다 교훈스러운 우리 집안의 역사인 것이다. 빨갱이를 그렇게 증오하며 자라온 우리 형제 중 42세를 일기로 빨갱이의 누명을 쓰고 비참히 죽어가야 할 형제가 생길 줄이야. 이토록 허무할 수가 있단 말인가?

「최교수자식답게 살아가거라」

형님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진상은 언제고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온 누리가 질서 있게 조화 속에 돌아가게 하시는 신의 섭리를 믿는다. 언젠가 하늘이 형의 한과 오욕을 풀어주는 광명의 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기원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나는 내일 퇴원해서 그들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역사는 우리를 돌이켜 볼 것이며, 고 최종길교수의 가족은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는가를 주시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끊끌이 전재할 것이며 고 최 교수의 가족답게 의연히 살아남아 만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날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 나는 이 비굴한 연명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것이라고 애써 마음을 달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고인의 유자녀 광준 회정이 자라나 「작은아버지은 왜 그토록 비굴했는가? 왜 피를 뿐 뒤를 따르지 못했는가? 아버지의 펫줄을 흐르던 그 피는 작은아버지의 펫줄에는 흐르지 않았단 말인가?」고 묻는다면...?

형님의 펫줄을 흐르던 그 피는 내 속에도 흐르고 있을 것인가?

정보부원인 나에게는 싸워서 패배할 싸움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 한번의 패배, 한번의 실패는 곧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다.

한번의 싸움밖에 할 수 없다면, 이겨야만 하는 그 한번의 싸움을 위해 살아 남으리라.

광준! 회정!

내가-, 우리 가문의 우리 세대가 그들의 조작에 의해 또 사라져 간다해도 눈물을 흘려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

언젠가 아빠의 소망이며 사랑이었던 수천의 법대생들이-, 서울대생들이-, 학생들이-, 너희 두 남매의 아버지며 형이며 오빠가 되어 너희 두 남매의 안위와 성장을 눈여겨 지켜주고 너희 두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날이 필연코 오고야 말리라.

최교수의 자식답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당당히 세상을 보며 살아가거라.

1973. 11. 11. 최 종 선

VI. 최종길 교수 관련 기사

1. 최근기사

(1) “의문사 최종길교수 자살할 이유 없었다”

73년 美CIA 한국책임자 그레그 증언…“모진 고문 당한 것은 분명”
뉴스 플러스 1998. 11. 19.

최근 25주기를 맞은 최종길 전서울법대교수의 사망사건에 대해 「NEWS+」 지난호(11월12일자)는 고문치사의 새로운 정황증거를 밝굴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최교수의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치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의문사 사건」과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을 재조명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번 호에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고 최교수가 사망한 73년 당시 한국주재 미 중앙정보부의 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의 증언을 소개한다. 그 뒤 주한 미대사를 역임한 그는 현재 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국협회(Korea Society)회장이다.

편집자

1973년 10월 19일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미 중앙정보부(CIA)의 한국책임자로 일하던 도널드 그레그 한국협회회장(전주한미대사)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교수가 자살할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레그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청와대를 방문, 박종규 당시 경호실장에게 엄중히 항의하면서 「이후락부장의 중앙정보부와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1주일 가량 지난 뒤 이부장이 해임(12월 2일)됐다면서 최교수 사건을 둘러싼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그레그씨와의 인터뷰 내용.

박종규경호실장과 만난 이유는 오로지 최교수 사건 때문인가.

「그렇다. 이 사건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이어 한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던 중앙정보부의 행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우리(CIA)의 목적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협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북한에 대해 써야 할 힘과 자원을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는 데에 쓰고 있었다. 더 이상 중앙정보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본국의 지시도 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박실장을 만나 이부장 지휘하의 KCIA와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부장이 당신의 항의로 인해 해임됐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항의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박실장을 통해 나의 항의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안다. 새로 임명된 신직수부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으로 신부장의 중앙정보부와는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부장의 지휘 아래 중앙정보부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배후에는 박대통령이 있는게 아닌가.

「그건 알 수 없다.」

왜 최교수의 사건에 분노했는가.

「최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심하게 조사받았다. 사망한 뒤 중앙정보부는 시신을 부인이나 의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심하게 조사받았다는 것은 고문이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다. 최교수는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는가.

「우리도 정확한 사인을 알 만한 위치에는 있지 않았다.」

최교수의 유가족은 최근 당신이 최교수의 사인을 「고문치사」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데...

「내가 아는 미국인 지인에게 최교수가 살해됐던지 또는 더욱 모진 고문을 피해 창문에서 뛰어내렸던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

어떤 경우든 최교수가 간첩사건에 연루된 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했다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와는 다른 것 아닌가.

「최교수는 그해 일어난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 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이를 배후에서 선동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은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는 반정부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간첩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했다. 나는 그가 어떤 간첩사건에도 연루될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홍은택/동아일보 위성턴 특파원

(2) "최종길교수는 고문으로 사망"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함께 끌려간 김장현씨 25년만의 증언...
모든 '의문사' '조작간첩' 재조명되야
뉴스 플러스 1998. 11. 19.

「지난 6월 친구들과 히말라야엘 갔습니다. 짧은날 등산 좋아하고 돌아다니길 좋아하다 '그런사건'까지 겪었지만 늘그막에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73년 이후 처음 복수 여권을 받았지요. 산에 오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군요. 난파선처럼 보낸 25년 세월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해 한참 울었습니다.」

답답한 표정의 김장현씨(63). 그는 73년 유럽거점 간첩단사건으로 구속돼 4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보로법상의 보호관찰도 끝났지만 「간첩」의 꼬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유럽출장 중 친지의 권유로 동베를린을 한 번 방문한 일이 그런 명예의 벌미가 됐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번 쓰면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는 그 명예를 쓴 사람이 어디 김씨뿐일까. 거슬러 올라가면 동베를린사건 관계자들이 그렇고, 최근의 황석영, 서경원, 서준식씨도 마찬가지다.

김씨가 73년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사망한 최종길서울법대교수의 아들 광준씨(34)와 함께 옛 중앙정보부의 남산 지하조사실을 찾았다. 어두운 통로와 고문실을 둘러보는 표정이 말할 수 없이 착잡했다. 그 암록의 폐쇄공간은 수많은 「조작간첩」들의 탄생지이기도 했다.

그들 모두가 지하조사실의 명예와 피울음을 털고 활짝 열린 공간에서 가슴을 펼 수 있는 날은 과연 올까.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들의 재심(再審)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아주 착잡한 만남이었다. 단풍이 막 불타기 시작한 서울 남산 산허리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든 웃으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었다.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유럽거점 간첩단사건과 관련해 조사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전 서울대 법대 최종길교수의 아들 광준씨(34. 부산대 법대 조교수)와 당시 그곳에서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고 4년 실형까지 산 김장현씨(63).

두 사람은 초면이었다. 「NEWS+」의 주선으로 10월 31일 옛 중앙정보부(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리) 남산분실 수사국과 지하벙커 등을 함께 둘러본 두 사람은 북반쳐오르는 감회를 얹누르지 못했다.

「어두운 방 저편에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백이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최씨) 「25년 세월이 흘렀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갇혀 모진 물고문과 몽둥이 세례 속에 '간첩 김장현'이 만들어진 곳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김씨)

"나도 엄청난 고문으로 죽는 줄 알았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두 사람은 나이차를 넘어 진한 정을 느끼는 듯 헤어질 줄을 몰랐다. 서로를 위로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모자랐다. 두 사람 모두 절실했던 신원(伸冤)의 욕구를 안은 듯했다. 최씨의 경우엔 선친의 간첩 누명을 벗기는 동시에 아직도 의

문 투성이인 사인을 백일하에 밝히는 일, 그리고 김씨는 「강요된 간첩 자백」 이후 「난파선처럼 살아온 사반세기」를 누구에게랄 것 없이 한번은 외치듯 얘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온몸에 넘쳤다.

10월 17일 서울대 법대에서는 최종길교수의 25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인의 동료교수였던 이수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은 「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최교수도 그 가운데 한사람이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최교수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고 그의 누명도 벗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도식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최종길교수 추모사업회」는 이수성, 배재식 전서울법대 교수가 추모문집 발간을, 김승훈신부가 사인규명을 각각 책임지기로 했다.

도대체 최교수 의문사 사건과 그 배경이 된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이란 무엇인가.

73년 8월 8일 김대중씨 납치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이 백경희정권과 중앙정보부로 쏠리면서 그해 가을 전국 대학가는 유신반대 대모로 들끓었다. 당시 국내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마침 한 해 전의 7·4공동성명 이후 다소 이완된 통일농의에서 정부의 베타적 주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책은 역시 「간첩단 사건」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리고 그때 중정이 취한 지렛대는 67년 동백림사건(「NEWS+」 97년 7월 3일자 참조)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체류 지식인들의 동베를린 북한대사관 방문 또는 북한인사 접촉 여부였다. 중정은 동백림사건 당시 프랑스 총책으로 지목됐던 노봉유씨(미체포. 그 뒤 알제리에서 사망)와 인천중학교 동창인 이재원씨(미체포. 네덜란드 유학생)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와 연고가 있거나 유럽에서 그와 접촉했던 인물들을 「엮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꼭 10년전, 경제과학심의회의 공무원으로 세미나 참석차 유럽에 갔을 때 이재원씨와 알게 돼 그와 함께 동베를린까지 방문했던 김장현씨가 우선 잡혀들어가고, 이어 독일 유학중이던 김성수씨(상자기사 참조)가 「김장현씨의 친구」라는 죄로 엮인다.

수사가 한달쯤 진행된 끝에 거의 마무리될 무렵인 73년 10월 16일, 이번엔 이씨의 인천중동기생으로 독일에 유학(1958-62)했던 최종길교수가 중정으로 소환된다. 그는 교수회의에서 시위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마구잡이 구타에 항의하는 등 이미 당국의 눈밖에 난 상태였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최교수가 10월 19일 새벽 1시반 조사받던 건물의 7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이 가족에게 전달된다. 여기엔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그러나 가족은 최교수의 자살 소식과 동베를린 운운의 중정 설명을 전혀 믿지 않았다. 시체부검에 의사인 부인을 포함해 가족의 입회가 사실상 봉쇄된 것은 물론 장례 때도 가족의 시체 접근이 원천차단됐기 때문이다. 때론 이같은 「정황증거」가 「직접증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해주는 법. 그로부터 1여년의 시간이 지난 74년 12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중정내부의 제보를 근거로 「최교수가 전기고문기의 오(誤)작동에 따른 심장파열로 사망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태는 한단계 진전되는 듯했다.

최교수 사망사건은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NEWS+」 취재진과 만나 사건 발생 25년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김장현씨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다.

「남산 지하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한 달쯤 지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내 방의 두 세 칸 앞에 「서울대교수 최종길」이라는 명패가 걸렸다. 당시 중정 지하실에서 조사받던 사

람은 나를 제외하면 최교수뿐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수사관의 감시 아래 화장실에 갈 때 맞은편에서 좀 통통한 사람이 다리를 절며 화장실쪽으로 걸어오더니 얼떨결에 나에게 목례를 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길이구나' 생각했다. 그도 나처럼 고문 때문에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김씨는 그 뒤 최교수와 다시는 마주치지 못했다. 그리고선 어느날 갑자기 수사요원들이 부산하게 왔다갔다 하더니 김씨에게 「며칠 조용한 데에 가서 쉬다오라」며 서울구치소로 보내더라는 것이다. 수사관을 제외하면 중정 조사과정에서 최교수를 목격한 유일한 인물인 김씨는 「그날」이 최교수의 사망일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당국 자살 발표로 … 가족의 사체접근 차단

그는 여기서 자신의 「고문체험」을 설명했다. 「처음엔 고향이 목포인데다 경제부처에 근무한 '죄'로 김대중씨의 '대중경제론'집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조건 대라는 겁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요.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인가'고 대들면 몸을 웅크리게 하고 꽁꽁 묶은 뒤 욕조에 발랑 눕히고 물을 먹입니다. '얘기하겠다'는 소리가 무조건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온갖 협박이 시작되지요. 「휴전선에 끌고가 쪘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황산을 부어 살을 녹인 뒤 빼는 갈아 날려버리겠다」 하는 등등. 그쯤 되면 「나는 산목숨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자신은 이미 7, 8회 이상 물고문을 당한 상태였는데 최교수는 들어온지 하루 이틀 사이에 「비슷한 몰골」이 됐던 사실을 감안하면 고문을 당해도 어지간히 당했던 것 같다고 김씨는 회고했다. 그밖에 최교수의 미국인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은 최근 「당시 주한 미CIA 책임자 도널드 그레그(나중에 주한대사)가 최교수 사건을 자살이 아닌 고문치사로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유가족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은 모두 「최교수 고문치사」의 새로운 정황증거인 셈이다. 물론 당시의 중정 관계자들은 「발표했던 내용 이상 더 얘기할 것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예 최교수 가족 또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이제 발생 25년만에 김장현씨의 증언 등으로 전기를 맞게 된 최교수 사인규명 문제와 유럽간첩단 사건이 백일하에 진상을 드러내고, 나아가 우리 현대사의 치부에 해당하는 각종 「의문사」와 「조작 간첩」 사건들도 빛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창희 기자

(3) "유신사죄 외친 참지식인"

대한매일 1988년 8월 20일

崔鍾吉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그는 70년대초 유신독재를 공공연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어느날 그의 비판의 소리가 사라졌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속에 죽었기 때문이었다. 공작정치를 자행하던 중앙정보부는 그를 간첩이라고 발표했다. 독재권력에 의해 그는 간첩으로 왜곡됐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수사중이었던 중앙정보부는 73년 10월 25일 "구속수사를 받던 崔鍾吉교수가 간첩혐의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화장실 창문을 통해 특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崔교수가 사망한지 6일 뒤의 발표였다.

그러나 당시 유가족은 물론 崔교수를 아는 사람중 중앙정보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 고문으로 죽자 자살로 위장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가족들은 검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장례마저도 소리없이 비밀리에 치러야 했다. 그의 죽음은 張俊河 선생의 죽음과 더불어 유신시대 최대 의문사 사건이다. 그의 의문사는 독재권력의 인권유린과 민주화 탄압 및 공작정치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사건 1년여 뒤인 74년 12월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崔교수가 전기고문 도중 조작 실수로 심장파열을 일으켜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러한 의혹은 당시 모 신문사 기자가 취재도중 입수해 사제단에 알려온 정보를 바탕으로 제기됐다"고 사건 당시 정보부 직원이었던 P씨가 전한다. P씨는 사제단에 있던 한 신부의 고등학교 1년 선배다. 그는 "앞서 열린 1주기 추도식때도 崔교수 죽음의 의혹이 제기됐었으며 몇개 신문의 초판에 실렸던 관련 기사가 밤사이 누락됐었다"고 전했다.

사제단은 88년 10월 6일 서울지검 김두희 검사장 앞으로 崔교수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제단은 "崔교수 사인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간첩 누명이 씌워졌다"고 주장하고 당시 사건 관련자로 이후락 정보부장 등 22명을 고발했다. 崔교수 죽음의 의혹이 사건발생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고발은 사건 당시 정보부 감찰실 직원으로 있던 崔교수 동생 종선씨(미국 거주)가 비밀리에 작성했던 수기가 바탕이 됐다. 그는 사건 후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친구가 있던 세브란스 정신병동에 약 1주일 간 입원하며 수기를 썼다.

그러나 수사는 걸돌았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8일 "崔교수가 타살됐다는 증

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족들과 사제단의 자료, 88년 검찰 발표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정보부 발표는 의혹 투성이다. 먼저 정보부는 “崔교수는 월드대학 유학중 중학동창생인 이재원·노봉유(미체포)에게 포섭돼 평양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주범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섭된 사람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사고 이후 시체를 현장에 두지 않고 급히 국립수사연구소로 옮긴 점, 가족이나 변호인·의사의 검시 참여를 불허한 점, 한장 뿐인 사체사진이 투신자살(뒷머리가 깨지고, 양쪽 손발이 부러졌다는 정보부 발표)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점 등도 정보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했다. 떨어진 지점이라는 곳도 종선씨가 그날 새벽 몰래 가본 결과 핏자국이나 이를 씻어낸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崔교수가 뛰어내렸다는 화장실 구조도 투신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162cm의 작고 뚱뚱한 그가 수사관들을 6m 거리에 둔 채 잠긴 창문을 열고 150cm 높이의 창문턱을 잡고 올라 투신한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부 감찰실에 근무하면서 건물구조를 잘 아는 동생 종선씨가 제기하는 최대 의혹이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10년전에 지났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정부나 국회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국민들은 당시 관련자들이 참회의 ‘양심선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종선씨는 수기에서 “그들도 언젠가 증언대에 서면 진실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착한 형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진실규명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다.

임창용 기자

(4) “역사의 진실에 공소시효는 없다”

대한매일 1988년 8월 20일

崔鍾吉 교수의 외아들인 光濬씨(34·부산대 법대 조교수)는 최근 독일에 다녀왔다. 학술 회의 때문에 갔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부친 행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 그러나 이번에도 새로운 것은 얻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부친 모교인 월드대학 출신인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 죽음의 내막을 알게 됐고, 그 이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자라면서 아버지의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되면서 답답함만 더해 갔습니다. 자상한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간첩누명까지 써야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독일 유학 시절 부친의 은사였던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등 아버지가 만났던 교수 동료들을 만나 부친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 했다.

그는 아버지가 하버드대 엔칭연구소 시절 만났던 코헨, 박스터, 라이샤워 교수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친의 결백을 믿었으며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고 光濬씨는 전한다. 특히 세계적인 민법학자 케겔교수는 75년 독일 슈피겔지에서崔교수 관련 기사를 읽고 당시 법무장관에게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光濬씨의 어린시절은 아픈 기억으로 가득하다. “1주기 추도식 때였어요. 당시 명동성당에서 갖기로 했는데 정보부에서 막아 어머님이 저와 동생을 끌고 감시의 눈을 피해 사람이 많은 시장거리 등을 몇차례씩 통과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때문에 여러번 이사를 해야 했다. 학교를 옮겨 조금만 있다보면 자신을 보는 친구나 선생님들의 눈치가 이상하게 느껴지곤 했다고. 그는 결국 고등학교만 마치고 유학길을 택해야 했다.

사건 이후 미망인 백경자씨(62·의사)는 “오로지 남편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 왔다”고 했다. 그녀는 당시 열살, 여덟살이던 光濬·希晶 남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이사다니기를 반복해야 했고 ‘자랑스런 아버지’ 였다는 점을 심어주어야 했다. 덕분에 光濬씨는 아버지 뒤를 이어 민법학자가 됐다. 希晶씨(32)는 카톨릭대학 영문과를 나와 출가해 미국에 살고 있다.

임창용 기자

2. 신문사설

(1) 한겨레신문 1988. 10. 21. 사설

고문과 암살에는 공소시효 없애라

- 장준하·최종길씨의 죽음과 실정법 -

형법상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여 일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시작된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성의 없는 자세 때문에 실망과 의혹만을 부풀리고 말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는 18일 “최교수가 타살되었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은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수사의 과정이나 내용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너무나 많다. 검찰이 자살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타살의 가능성은 확인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중앙정보부가 사건 직후에 발표한 ‘자살설’은 허구로 가득차 있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은 허위발표의 경위는 물론 진상을 더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궁했어야 옳다. 최 교수에 대한 조사과정, 죽음의 현장, 사체의 상태, 가족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회유와 협박, 증거의 은폐 등 수 많은 의문들은 고문살인의 결정적 단서가 될 만한 사실들이었다. 공소시효 만료 며칠을 앞두고 ‘고문자들’이 자백할 리는 결코 없었다. 더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요란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번쩍이던 ‘검찰청사의 불’을 밤새 밝히면서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꾀어야 했다.

최 교수의 의문의 죽음은 민주·통일운동 지도자의 죽음을 새롭게 떠올렸다. 1975년 [사상계] 전 발행인 장준하씨가 등산길에서 당한 죽음이 정치적 암살이 아니냐는 의문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정치적 반대자의 목숨을 ‘검은 손’으로 빼앗은 권력의 죄악을 밝히는 일은 희생자나 유족의 개인적 한을 풀어 주는 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일제의 고등경찰이 민족운동가들에게 가하던 잔학한 고문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8.15이래 수없이 자행된 고문과 암살의 진상을 밝히고 옹분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통’은 계속될 것이다.

히틀러와 함께 학살과 고문을 한 나치의 인간백정들은 아직도 추적을 받고, 잡히면 재판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문자와 정치적 암살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최 교수의 유족은 “실정법의 공소시효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법, 역사의 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흐느꼈다. 실정법이건 하느님의 법이건 역사의 법이건 간에 인간 세상의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고문살인을 저지른 자가 공소시효가 지난 뒤 어둠 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더불어 살 세상이 아니다.

(2) 한국일보 1988. 10. 20. 사설

疑惑으로 끝난 崔教授사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의혹을 캐겠다던 검찰은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낸채 공소시효가 끝났다.

최근 터진 봇물처럼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온 지난날의 의혹가운데, 15년 전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사에서 『조사받던 중 투신자살했다』는 崔鍾吉 교수의 의문의 죽음은 15년만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의문」만 남긴채 법적 처리가 끝났다.

애초에 이 사건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6일 검찰에 재조사를 요구함으로써 다시 문제된 것이었다. 15년 전 중앙정보부의 발표처럼 최교수의 간첩혐의는 근거가 없고, 그의 죽음도 고문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18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조사결과는 『최교수가 타살됐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15년 전 한 교수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20 수년동안, 특히 70년대 초 유신쿠데타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강권통치체제 밑에서 권력에 의해 저질려진 불법·비리와 인권유린의 악몽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특히 80년대 들어 性고문 사건과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사실 최교수의 죽음에 대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유가족들이 제기한 의문점들은 고문치사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과장과 동생 최종선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흔자국을 보지 못했고, 현장사진도 없다한다.

또한 최교수에 대한 수사기록도, 그가 간첩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가족측의 주장은 최교수가 유신체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고문 끝에 죽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재조사는 결국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임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

파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났지만, 의혹은 계속해서 의혹으로 남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법적 시효와 관계없이 사건의 진상은 끝까지 캐야한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의구현사제단이 재조사를 요구한지 불과 12일 뒤의 일이다. 그동안 검찰은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12명과 부검의사 등을 조사했다 한다. 그러나 재조사 요구 대상에 올랐던 당시의 李厚洛부장이나 金致烈차장 등이 조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특정인을 조사하고 안하고는 조사진행과정에서 결정될 일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조사는 공개적으로 명명이 진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검찰의 재수사는 의혹을 풀기는커녕 더욱 짙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체제하에서 중앙정보부가 권력유지조직구실을 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최교수사건은 정정당당하게 규명해야 한다. 또 전화를 도청하고, 우편물을 뜯어보는 것 같은 기초적인 인권의 유린을 청산해야 한다.

법적 처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론의 심판이요 역사의 심판이다.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관계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물론 재조사과정에는 어떤 聖域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가정보조직은 정치에서 초연한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3) 동아일보 1988. 10. 20. 사설

최교수는 왜 죽었나

崔鍾吉 서울법대 교수는 설령 타살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살인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또 투신자살했더라도 자살에 이르도록까지하는 그 고문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람도 징역을 살릴 수 없게 됐다. 崔교수의 죽음에 대한 公訴時效, 15년의 세월이 베일에 가려진채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殺害者 또는 자살로 이끈 그 폭력을 처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해서 죽었는가]는 밝혀져야 한다. 實定法에 의한 처벌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한다. 그것이 自然法의 요구이며 당위일 것이다.

지난 73년 10월 19일 서울법대 崔鍾吉교수는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사에서 죽었다. 국립대학의 교수가 『물어볼 것이 있으니 나와달라』는 말에 따라 스스로 중앙정보부에 갔다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왔다. 그 죽음을 두고 당국은 『7층조사실에서 조사받던중 화장실에 가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文面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비단 崔교수의 가족만이 아니다. 그 때 그 기관에 들어간 사람은 死色이 되어 사시나무 떨 듯 떨어야했다. 그 기관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심정적으로 이미 초주검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斷末魔의 그 곳에서 국립대학교수가 목숨을 마쳤다.

그 경우 「自殺」을 그 기관이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과연 그들은 그렇게 발표했었다. 그 발표를 바로 순순히 전면 수긍할 수 있을까. 그 隱地의 密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는 아예 알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공포정치가 極에 달하면 백성이 살아남을 최상의 수단은 「눈감아버리고 입다물어버리는」 침묵이 아닌가.

지난 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정에 따라 사인 재규명에 나선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바로 그날인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타살되었다는 증거

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그럴 것이다. 백주대로에서 공개리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몰살하는 일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가 죽음을 맞았다는 73년 10월 19일 새벽 5시의 「어두움」의 시각에서, 남산분청사라는 차단된 공간에서 한 개인의 죽음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죽음이 진상이 밝혀진다해도 서로 난처하고 민망할 수사기관상호의 입장이 아닌가. 특히 시효가 다 되어 그날만 넘기면 「公訴提起가 不可能한데 어떻게 수사하란 말이냐」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판에 자살과 타살 어느 쪽도 증거가 없다고 어물쩍 넘어가는게 최상의 방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崔교수의 죽음은, 그死因은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 죽음과 관련된 인사를 처벌하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歷史의斷罪를 위해서 진상은 날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公訴時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應報감정이나 범인의 악성이 소멸되었기 때문, 유죄의 증거와 무죄의 증거가 모두散逸해 진실 발견이 곤란하기 때문, 수사訴追기관의怠慢책임을 혐의자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崔교수의 경우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본다. 그「범인」은時效에 걸려 면책이겠지만 그「범죄」는 밝혀져야 한다. 崔교수의 부인白慶子씨의 말대로『실정법에 의한 공소시효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법, 역사의 법에 따른 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사건의 전말

(1) NEWSMAKER 1993. 5.

中情수사중 투신자살' 또 하나의 의문사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고문치사였다”

윤재걸 <저널리스트>

어동과 질곡의 시대에 자행된 '비밀 경찰'의 만행들이 문민정치시대를 맞아 하나둘씩 그 껏풀을 벗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된 위치를 되찾은 이 마당에 그동안 의혹 속에 감춰졌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역사 속에 본디의 제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의 순리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 '순리'라는 것도 그냥 앉아서 획득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 가 있다.

최근 모 TV방송을 통해 '정치적 암살' 임이 거의 확인된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더불어 70년대 유신 직후 최대의혹 사건으로 불리는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의 의문의 자살 또한 역사의 진실을 정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잘 알다시피 앞의 사건은 '동산중 실족추악사'로, 뒤의 사건은 '수사중 투신 추악사'로 각각 발표됐었다.

이 두 사건은 '추악사'라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으며, 실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을 벌써 넘겼음은 물론이다. "인간의 양심과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유족들의 울부짖음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힘에 의해 감춰진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만 한다.

진상규명 차원에서 문민정부의 단호한 척결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끝내 '인간의 진실'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다름아닌 창희의 양심선언인 것이다. 이근안씨와 같은 이들의 '자수'와 '양심선언'이 봇물을 이용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해 본다.

73년 간첩단 관련 자진출두 3일만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종길 교수의 죽음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73년 10월 25일. 이날 중앙정보부장 김치열 차장은 이재원 이재문 형제 등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5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최교수가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자살했다고 밝혔다.

최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남산청사에 들어선 시각은 10월 16일 오후 2시. 중정에서 수사 중인 간첩사건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했던 최교수는 10월 19일 새벽 1시30분 '자살'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발표됐다.

사건 직후 가족들은 강압에 못이겨 장례마저도 비밀리에 소리없이 치렀다. 자살이 아닌, 고문치사임을 확신했으나 서슬이 퍼런 중앙정보부의 협박과 기만으로 어디에다 하소연 할

수조차 없었다. 사건 직후 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사체검시 역시 가족들의 입회없이 치러졌다. 그러나 오직 침묵만이 강요되던 어둠의 세월 속에서도 진실의 짙은 돋아나고 있었다. 세상사람들은 너나없이 '최교수가 전기고문으로 죽임을 당한 뒤 자살로 위장됐다'고 믿고 있었다.

진실의 짙은 1년 뒤인 1974년 12월 18일 명동성당에서 있은 '인권회복을 위해 죽은 사람을 위한 단식기도회'에서 최초로 돌아났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오태순 신부는 최교수 추도사에서 이렇게 절규했다.

"당신의 자살은 날조된 것입니다. 지금 미망인이 된 당신의 부인께서도 스스로가 의사이면서도 사체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시체는 봉인된 체 다시는 시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조건 밑에 극비리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께서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캐기 위한 노력은 벽에 부딪쳤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당신 동료들의 추적도 협박과 공포분위기로 방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문치사당하였다는 소문은 보도를 통한 것보다도 더 빨리, 더 넓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말도 또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신을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하는 기계의 조작법을 몰라 그렇게 되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이날 그동안 외부접촉을 제한받았던 최교수의 미망인 백경자씨(당시 40세)는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남편의 억울한 누명과 밝혀지지 않은 죽음의 진상을 하느님께 절규했다. 이 기도회가 있은 이후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은 기회가 있을 적마다 계속되어왔다. 75년 3월 1일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의 한완상 교수는 '최종길 교수 비운의 진상을 공명정대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같은 해 3월 7일 사제단의 진상규명요구성명, 그리고 80년 유신체제가 무너진 '서울의 봄'을 맞아 서울법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으나 5.17사태로 무산되고 말았다.

어둠과 질곡의 세월이었던 70년대를 빠져나왔으나 80년대 역시 군부의 강압통치는 여전히 '비밀경찰'에 의존함으로써 해당초 진상규명이란 생각할 수 조차 없었다. 다시 동토의 세월 속으로 빠져든 것이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위에서 외쳐라'(마태 10:26~27).

천주교 사제단은 마침내 지난 15년 세월을 갈고 닦아온 정의의 칼을 뽑아들었다. 1988년 10월 6일 사제단은 성경말씀을 틀어 최교수 죽음에 드리워진 의혹의 진상을 세상의 지붕 위에 올라가 외쳐댔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폭로로 이땅의 6.29 국민혁명에 앞장섰던 사제단의 계속된 진실의 행진에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제단은 이날 서울지검 김두희 검사장 앞으로 '최종길 교수 사인진상의 규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사제단은 고발장을 통해 "19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된 의혹이 짙다"면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사제단은 또 "최교수의 사인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최교수에게 간첩의 누명이 씌워졌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사건관련자로 이후락 전 정보부장 등 22명을 고발하는 한편, "정부 또는 당해기관이 공식사과를 통해 그의 명예

를 회복시켜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88년 사제단서 고발, 곁도는 수사

사제단은 "지난 74년 12월 18일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이래 그간 유족들의 증언과 기록 및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 고문치사가 확실하다고 믿어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또 "진상조사에 필요하다면 관련자료의 제시는 물론 관련인사의 증언 주선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제단은 특히 이번 진상규명요청이 공소시효 만료지점과 맞물려 있는 점과 관련, "하느님의 정의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진실은 공소시효 차원을 뛰어넘어 공명 정대하게 밝혀져야 하며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권발동 등 모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제단의 고발장을 접수, 이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1부(김상수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8일 "수사결과 최교수의 사망과 관련, 형사처벌할 아무런 단서나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검찰은 이날까지 최교수의 동생 최종선씨, 사제단의 김승훈 신부, 당시 중정관계자 12명, 부검의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상현 법의학과장, 변사사건 지휘검사인 이창우씨 등을 조사했으나 "최교수가 타살했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진상에 대한 유보'인 동시에 직무유기요, 책임회피의 자세라는 세간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6.29로 국민혁명의 열기를 잠재운 군사정권의 구조적 폭압장치를 허물기에는 아직은 성급한 시도였다고 봐야 할 터였다.

사제단은 수사과정중에 이미 검찰 또한 '비밀경찰' 이란 포괄적인 범주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제단은 연미사 강론을 통해 이미 "검찰의 진상조사에 크게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오늘 검찰의 조사 방향과 전도를 볼 때 더욱 그렇다. 박종철군 사건 때도 검찰은 대공수사단의 각본을 따랐을 뿐 권능을 가지고 조사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오늘의 안전기획부를 감히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어서 사제단은 "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승훈·오태순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영구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두, 참고인 진술을 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검찰이 최교수의 의문에 싸인 죽음을 규명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내세우거나 투신자살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의 비공식 견해들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어떤 예단과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인상을 풍겼으며, 어떤 담당검사는 밝혀야 될 진실이 무엇인가 분명한 인식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소극적 진상규명의 태도로써는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또 한번의 은폐와 조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없이 앞으로 대검찰청이 직접 조사에 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안전기획부가 제2의 은폐·조작에 가담하지 말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벗나간 수사결과'를 벌써부터 예견하고 있었던 듯하다.

'투신자살'과 '간첩'의 허구성 논박

어둠과 질곡의 시대에 인권의 보루였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유족들은 지금까지의 자료와 함께 검찰조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을 종합, '투신자살'과 '간첩'이라는 기왕의 중앙정보부 발표의 허구성을 논박했다.

1. 중앙정보부는 당초 최종길 교수가 간첩으로 구속, 조사받던 중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의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를 입증할 구속영장, 진술서, 자필진술서, 육성녹음 등 증거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최종길 교수를 신문한 공작관들이 작성해 놓은 진술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사후에 조작·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최종길 교수에 대한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최교수에 대한 간첩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우리들의 심증이다. 최교수에 대한 간첩혐의 부문이 백지화, 무혐의라면 최교수는 투신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 치사되었음이 더욱 분명한 것이다.

2. 최교수가 숨진 6일 후인 73년 10월 25일 김치열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은 '유럽거점 대규모간첩단사건'을 발표하면서 "최교수는 서독 퀼른대학 유학중 중학동창인 이재원·노봉유(미체포)에게 포섭돼 동독을 거쳐 평양에 가서 20일간의 간첩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조사를 받다가..."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유족들은 △ 주범이 잡히지 않은 마당에 포섭된 사람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으며 △ 최교수는 검거된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물어볼 것이 있으니 같이 나와달라"는 안홍용 당시 공작담당과장의 부탁으로 동생 최종선씨(당시 안기부 감찰실 근무)와 함께 남산청사에 들어갔으며 △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음에도 '구속수사중'이라고 발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최교수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묶어놓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3. 투신자살했다는 현장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전해주는 현장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것은 무얼 말함인가. 정보부측이 단 한 장 제시하고 있는 최교수의 투신자살 현장사진이란 최교수가 반듯이 누워있는 흑백사진뿐이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족에게 설명한 내용 - 뒷머리가 깨지고, 양쪽의 손발이 부러졌다고 했음 - 과 상이할 뿐 아니라, 천연색으로 상세하게 전후 좌우, 또는 치명적인 손상부위를 근접촬영해야 하는 것이 변사체처리의 상식임에 비추어 현장을 있는 그대로 찍은 것이 아니라, 이는 은폐·조작을 위한 사진임이 명백하다. 검찰에 의하면 이 사진은 이문동청의 사진사가 찍었다고 하는데, 통행금지시간에, 그것도 멀리 이문동 청사의 사진사를 동원했다는 사실자체 및 그 의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과장 이병정씨와 최종선씨와의 대질신문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병정 감찰과장은 정보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통행금지 해제(새벽4시)전에 중정 남산청사에 도착, 투신현장을 살펴보았으나 이미 사체도 없었고 흙자국은 물론 물로 씻어낸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의아해서 옆에 있던 5국 수사관에게 사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앰뷸런스로 옮겼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조직법과 직무규정에 의해 부원의 범죄를 조사하는 공식적인 책임자인 감찰과장의 현장조사 이전에 이미 사체를 치우고 정리했다는 것은 조사 전에 이미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5. 중앙정보부 발표 사망시간은 10월 19일 새벽 1시 30분인 바, 통행금지 해제시간인 4시 이전에 이병정 과장이 도착했으므로 현장을 정리하고 사체를 옮긴 시간이 2시간 30분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를 옮기기 전 병원 등 제3의 장소로 먼저 옮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6. 이병정 감찰과장과의 대질신문에서 당시 이과장은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시 안경상 수사국장, 장송록 수사단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관련조사관 5명은 중징계토록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5명의 수사관이 최종길 교수에 대한 고문에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자는 2명이 아니고 5명인 것이다.

7. 당시 중정 감찰실에 근무해 남산청사의 내부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동생 최종선씨에 따르면 6층에 부장 집무실이 있어 7층에는 '기분나쁜' 조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가 "7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자살로 믿기가 어렵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중인 부검자료에 따르면 최교수의 직접사인은 갈비뼈 파손에 의한 심장파열과 두개골 골절로 나타났는데 7층에서 투신자살했을 경우 갈비뼈 파손에 의한 심장파열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종길 교수의 죽음을 둘러싼 최대의혹은 그가 뛰어내렸다는 화장실구조 자체가 투신자살로 페어맞추기에는 너무도 황당하다는 것이 동생 최종선씨의 도해를 결들인 주장이다. 최교수의 사망 직후 장송록 수사단장은 유족들에게 "처음 이를 동안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해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으나 어제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하므로 분위기가 아득한 7층에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기에 변소에 테려갔더니 감시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변기를 밟고 창문턱에 올라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교수님! 가족도 있으신 분이 그러시면 되겠느냐'고 회유하고, 다른 수사관이 뒤로 돌아가 다리를 잡는 순간 투신하셨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던 것.

투신하기 곤란한 화장실 구조

이와 관련, 동생 최종선씨는 장송록 수사단장이 얼떨결에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라고 털어놓음으로써 형님이 고문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따라서 고문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장실의 구조도 그렇지만 수사관 2명이 동시에 한눈을 팔았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결들이고 있다.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으로 남산청사에서 근무한 터라 어느 누구보다도 전몰구조를 잘 알고 있는 최교수의 동생 종선씨가 상세하게 도해한 화장실 소변기와 그 위 유리창 구조를 보면서 '결코 투신자살일 수 없는 사유'를 들어보기로 하자.

최교수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창문은 가로 1m 세로 1.5m 가량의 알루미늄 새시로 되어 있다. 유리창 문턱의 높이는 1.5m 안팎, 창문턱의 폭은 20cm 정도로(안쪽 10cm, 바깥쪽

10cm) 창문턱의 안쪽이 45도 각도로 타일로 시공돼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려면 우선 창문을 열고 창문턱의 바깥쪽을 손으로 잡고서야 창턱에 올라서서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게 돼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5m 정도 높이의 창문턱에 올라서려면 소변기 앞부리를 밟고 그 다음 소변기 꼭대기를 딛고 나서야 비로소 창문턱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 소변을 보다가 창문턱에 올라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필요한 동작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도표 참조).

1. 소변을 보다가 창문 잠그는 장치쪽으로 몸을 옮긴다.
2. 창문 잠그는 장치를 푼다.
3. 창문을 연다.
4. 창문에서 손을 떼면서 창문턱 밖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 의지한다.
5. 창턱에 손을 걸쳐 매달려 의지한 상태에서 원발이나 오른발 중 한 발을 먼저 변기 앞 부리에 옮겨놓는다.
6. 땅에 남아있는 한 발을 마저 들어 변기 앞부리에 두 발을 모아 완전히 올라선다.
7. 다시 한 발을 들어 변기 꼭대기에 올려놓은 다음
8. 나머지 한 발을 변기 꼭대기에 올려 두 발을 모은다.
9. 다시 한 발을 들어 창문턱에 올려 놓고
10. 다음 나머지 한 발을 들어 창문턱에 모으고
11. 창턱을 잡은 손을 떼면서 옆드린 자세에서 일어나며 윗창턱 내지 창문을 잡고 의지해 완전히 일어섰다가
12. 창밖을 향해 뛰어내린다.

이상과 같은 동작을 실수없이 연속적으로 한다고 칠 때 한 동작당 1초만 잡더라도 최소한 12초는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같은 가정은 변기가 미끄럽다거나, 건물구조가 눈에 설어 손놀림이 익숙치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계산이다.

그런데 최교수는 유리창 잠그는 장치(항상 잠겨 있기 마련이다)에 익숙치도 않았을 것이고, 또 1백62cm의 작고 둉뚱한 몸집이며, 조사받는 도중이었으므로 당연히 허리띠를 풀어놓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봤을 때 2명의 수사관이 6m(화장실 끝과 끝의 거리) 이내의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창문으로 뛰어 내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고문치사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가 주장하는 최종길 교수의 혐의사항은 과연 무엇일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1973년 10월 25일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이다.

“최종길(42. 구속중 사망)-이재원(미체포)과 중학교 동기동창으로 서울법대 대학원을 나와 57년 유학, 58년부터 62년까지 서독 쾰른 대학에 연수중 58년 중학동창이며 북한의 프랑스 공작책인 노봉유(43)와 접촉, 포섭돼 동독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60년에는 이재원에게 인계돼 동독을 거쳐 평양에 가서 20일간 간첩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 공작 금 2천달러를 받은 후 서독으로 돌아왔다. 62년 이재원으로부터 학원토대를 구축할 것을 지령받고 귀국, 서울대 법대교수로 취직한 뒤 67년까지 이재원에게 연 2회 사업보고를 했다. 70년 미국에 가 다시 북한공작원과 접촉, 72년 귀로에 서독 쾰른에서 약 1개월동안 머물며 이재원과 접선했다. 금년 10월 17일 중앙정보부에 검거돼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 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창문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고문으로 인한 최교수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저항을 탄압할 구실을 마련키 위해 자살로 위장하고 또 간첩으로까지 조작한 천인공노할 각본에 불과한 것”이라고 중정의 발표를 일축했다.

최교수가 간첩이 아닌 것은 친동생 종선씨가 72년 1월 중앙정보부 정규과정 9기 시험에 합격, 사건 당시 중정 감찰실이라는 요직에 근무했으며, 이후 81년 1월 사직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간첩의 동생을 어떻게 중앙정보부에 근무토록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거기다가 최교수의 장남 광준군이 아버지가 다니던 서독 쾰른 대학에 어떻게 유학할 수 있었겠느냐는 점도 함께 덧붙이고 있다.

정부비판이 학원공작 책임자 자극

유족들과 최교수의 친지들은 한결같이 최교수 죽음의 실마리를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 및 학원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찾고 있다. 73년 10월 당시의 정국은 유신 1주년을 맞는 시점으로서 그해 8월 8일 이른바 ‘김대중납치사건’이 미수에 그쳐 박정희 정권의 위상이 극도로 실추된 데다, 유신 이후 내내 잠잠하던 대학가에서 최초로 반정부시위가 터져나옴으로써 정국이 급랭, 뭔가 국면전환의 고단위 충격요법을 쓰려던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최교수가 사건 직전의 학원사태와 관련, 서울법대 교수회의 석상에서 △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가 있는가 △ 총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 항의하는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런 그의 언행들이 당시 학원공작 책임자들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를 조사한 중정의 부서가 유럽간첩단사건의 수사국 수사과가 아니고 공작과였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과 무관치 않다는 게 사제단의 시각이다.

“우리 사제단이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최교수가 연관이 되었다고 하는 유럽간첩단 사건은 최교수가 자진출두했던 1973년 10월 16일에는 수사가 거의 종결되어 있었고 검찰송치를 위한 송치의견서가 완성되어 있었으며 간첩단사건을 조사한 부서는 수사국 수사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교수만을 새로이 처음부터 수사국 공작과에서 담당하였다. 같은 사건의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상식일 터임에도 수사과에서 수사가 종결단계에 있었던 때에 수사전문가가 아닌 공작전문가에게 최교수에 대한 조사가 맡겨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간첩관련 여부의 조사보다도 공작목적 하에서 최교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2) 주간조선 1988. 10.

서울法大 崔鍾吉 교수 의문의 죽음 自殺인가, 他殺인가

死後 15년만에 死因 규명 움직임

우태영 <주간부기자>

천주교사제단 발표계기로 서울지검서 규명 착수

서울법대 崔鍾吉교수의 죽음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73년 10월 25일이다. 당시 金致烈 중앙정보부 차장은 李在元 등 유럽거점간첩단 5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중 崔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중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변소 창문으로 투신자살했다고 밝히고 崔교수와 당시 학원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난 10월 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최교수의 죽음은 그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혹심한 고문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폭압적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서울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崔교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지만, 이번 경우 朴鐘哲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의 폭로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제단이 당국의 발표에 대한 반박을 했고 서울지검도 사인규명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崔교수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가 실제로 당국의 발표대로 투신자살 했는가, 아니면 사제단의 반박대로 고문에 의한 사망인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가 정말 간첩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崔교수의 사망원인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공식발표는 崔교수가 범행을 자백한 뒤인 73년 10월 19일 새벽 1시 30분 용변을 본다고 변소에 가서 창문으로 투신자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제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崔교수 사망 직후 수사국의 수사단장 장송록은 유족들에게 崔교수가 변소 창문으로 투신하였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 수사관 2명 중 한 수사관은, '교수님! 가족이 있는 분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희유하고 다른 수사관은 뒤로 살금살금 가서 다리를 잡는 순간 투신한 것이다 - 고 하였다. 이 말은 당시 崔교수를 변소에 데리고 갔던 수사관 2명이 崔교수의 투신을 막으려 했으나 막을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崔교수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변소의 창문은 가로 1m, 세로 1.5m 가량의 알루미늄 새시로 되어 있고 유리창 문턱의 높이는 1.5m 가량, 창문턱의 폭은 20cm정도로 창문턱의 내부쪽은 45도 각도로 타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여기로 뛰어내리려면 ▲ 창문으로 다가가 시건을 풀고 ▲ 창문을 열고 ▲ 창문턱 바깥쪽으로 손을 내밀어 창문턱을 잡고 의지한다음 ▲ 한 발을 변기의 앞부리 위에 옮겨놓고 다른 발로 마저 들어 두 발로 모으고 ▲ 다시 한 단계 위인 약 1.5m 높이의 변기 꼭대기 위로 같은 동작을 거쳐 완전히 올라서서 ▲ 한 발을 들어 창문턱으로 옮겨놓고 나머지 발을 옮겨 두발을 모으고 나서 ▲ 창틀을 잡은 손을 떼면서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 ▲ 창밖을 향해 뛰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동작도 실수없이 신속하게 하더라도 어렵잖아 10초 이상이 걸리도록 되어 있어 그 사이에 崔교수를 감시하던 수사관 2명이 길이 6m, 폭 3m의 좁은 공간에서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제단은 또 崔교수가 투신한 직후에 중앙정보부 감찰실에 근무하던 崔교수의 동생 崔鍾善씨가 현장에 가보았지만 투신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崔교수의 사체부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유족들과 변호인의 입회를 완강히 거부한 점 등을 들어 투신자살의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反共주의자 "절대로 간첩일 수 없다"

崔교수의 죽음에 대해 이와 관련돼서 당시에 돌던 루머 중의 하나는 崔교수가 조사를 받던 중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분을 참지 못해 창문 밖으로 달려가 투신자살했다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추리는 崔교수의 성격이 매우 다혈질이며 순수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 이 사건 이후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일체 지하에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에 대해서도 崔교수의 주변에서는 간첩수사를 한다면서 중앙정보부에서 그처럼 허술하게 경비를 설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즉, 항상 자해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간첩에 대해 잠시라도 눈을 떼며 조사했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또 崔교수가 울분을 못 참고 투신했다 하더라도 유족들에게 사체를 공개하지 않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 崔교수가 당시 조사받다가 평소의 지병이던 고혈압이 도져서 다른 합병증이 유발돼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崔교수의 부인 白京子씨는 『崔교수는 절대 고혈압이 아니었으며, 몸이 약간 비만해서 매일같이 수영을 했던 정상적인 건강체질이었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위의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면서 사제단에서는 崔교수가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崔교수가 변사한 이후부터 崔교수의 유족·친지·제자들은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데에 심증을 굳히고 있다. 또 崔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됐을 당시 崔교수의 앞방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K목사도 당시 崔교수가 고문을 받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제단의 반박성명 중에서도 이에 대한 정황증거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崔교수 사망 직후 앞에서 말한 수사단장 장송록은 유족에게 「崔교수가 정보부에 온 직후 처음 이를 동안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으나 어제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하므로 아득한 7층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기에 …(중략)… 투신하였다는 겁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 왔더니 투신자살을 하였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崔교수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잔학한 고문을 당하였음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었음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 崔교수의 동생 鍾善씨도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시사하고 있다. 鍾善씨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72년 1월 중앙정보부 정규과정 9기 시험에 합격, 사건 당시 정보부 감찰실에서 근무했으며 81년 1월 사직했다. 鍾善씨는 친형 崔교수의 사망 이후에도 중앙정보부에서 계속 근무한 데 대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정보부 내부에서 나를 보면 형님(崔교수) 사건이 떠오를 것이고 그러면 인권유린이나 고문행위 등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崔교수의 사인 못지 않게 관심이 가는 부분은崔교수가 진짜 간첩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崔교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또 죽은 자에 대한 재판이 있었을리도 없고 유죄판결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리 때문에 그가 공인된 간첩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러나 당시崔교수가 간첩이라는 정보부의 발표가 모든 매스컴에 대서특필됐었기 때문에崔교수가 간첩이었다는 인식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부인 白慶子씨는 『공권력에 의해 씌워진 간첩혐의는 반드시 공권력에 의해 벗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崔교수의 간첩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원과 중학동기로 57년 5월 스위스 취리히대학에서 유학하고 58년 서독 퀼른대학 연수중 중학동창인 프랑스주재 북한 공작책인 노봉유에게 포섭돼 동독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 미화 현금 2천달러를 받았고 계속 연구생활을 하면서 61년 11월 다시 공작금 8백달러를 받고 유학생들을 상대로 평화통일 선전활동을 하다가 62년 7월 귀국, 서울법대 강사로 취직하여 합법토대 구축, 62년 10월 ~ 67년 7월 연2회 이재원에게 은어로 사업보고, 동백림사건 후 이재원과 연락이 끊겼다가 72년 7월 미국에서 귀국 도중 서독 퀼른에 약 1개월 체류하면서 이재원과 재접선, 사업보고하고 교양을 받은 후 그해 8월 귀국.』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은 먼저崔교수의 성향을 들어 그가 절대 간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崔교수가 劉基天교수의 수제자였다는 점이다. 劉교수는 세상이 다 아는 철저한 反共주의자이다.崔교수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바로 劉교수인데 그가 어떻게 공산당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崔교수가 학생들을 포섭하려 했다는 데 대해 당시에 학생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서울법대에서 운동권의 핵심역할을 했던 李信範씨는 『삼선개헌 때나 유신 이후에나崔교수가 불순분자로 찍힌 학생들과 접촉한 적도 없고 정부를 내놓고 비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崔교수가 사석에서라도 무슨 이념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며 학생들에게 그저 착실한 자유민주주의자, 착한 민법교수였다』고 했다.

崔교수가 연행될 때 순순히 응했다는 것도 그가 친첩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주장이 있다.崔교수의 동생 鍾善씨는崔교수의 연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때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서 형님을 모셔서 협조를 받아야겠다고 전해 왔다. 그래서 10월 16일 오전 10시쯤 아스토리아 호텔 커피숍에서 형님을 만나 남산으로 향했다. 정문에서 형님을 대공수사국 직원들에게 인계했다. 당시 형님의 뜻은 죄지은 것이 없는데 국가기관에서 협조해 달라니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에 형님이 간첩이었다면 그처럼 순순히 나를 따라 오셨겠는가.』

“원하는대로 돈을 주겠다” 정보부서 가족들 회유

또崔교수가 사망한 직후에 정보부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것을 봐도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다. 白慶子씨는 『崔교수가 돌아가신 직후에 당시 정보부의 한 간부가 찾아와서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명예회복이 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진짜崔교수가 간첩이었다면 그런 제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수사상의 여러 가지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崔교수가 정보부에 간 것이 10월 16일이고

사망한 것이 10월 19일 새벽인데 그처럼 짧은 시일 안에 간첩이라는 혐의 사실이 낱낱이 조사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또 사제단은 이번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수사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사제단이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崔교수가 연관이 되었다고 하는 이재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유럽거점간첩단 사건은崔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를 했던 1973년 10월 16일 당시에는 수사가 거의 종결되어 있었고 검찰송치를 위한 송치의견서가 완성되어 있었으며 간첩단 사건을 조사한 부서는 중앙정보부 수사국 수사과이었음에도崔교수만을 새로이 처음부터 수사국 공작과에서 담당하였다. 같은 사건의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상식일 터임에도 수사과에서 수사가 종결단계에 있었던 때에 수사전문가가 아닌 공작전문가에게崔교수에 대한 조사가 맡겨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간첩관련 여부의 사실보다 공작목적에서崔교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외에도 도대체 간첩의 친동생을 중앙정보부에서 계속 근무토록 할 수가 있겠는가, 또崔교수의 아들을崔교수가 다니던 서독 퀼른대학에 유학하도록 허락할 수 있겠는가 등의 의문점을崔교수 주변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유족들은崔교수의 죽음을 당시의 학원 상황,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당시 상황은 유신 이후 잠시동안 잠잠하던 대학가에서 최초로 반정부시위가 터져나올 때였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도 심하던 때였다.

이때에 열린 서울법대 교수회의석상에서崔교수가 ▲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가 있는가 ▲ 총장을朴正熙 대통령에게 보내 항의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것이 당시 학원 정책담당자들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제단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崔교수의 죽음에 대해 민주당의 姜信玉 의원은 『일반적인 법률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결을 통한 재조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3) 경향신문 1988. 10. 19

19일 15주기 맞는 고 최종길 서울법대교수 ‘유신독재의 타살’ 재조명

사제단, 15년 추적끝 진실 공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위에서 외쳐라”(마태 10:26~27)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최종길 교수의 사인과 관련, 있는 그대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맨 앞에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 과연 최종길 교수의 죽음의 진상은 15년 만에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인가.

유신독재의 부정과 비리의 연장선위에서 제5공화국의 부정과 비리는 이루어졌고, 또 가능했다. 제 5공화국의 부정과 비리가 논의되는 오늘, 그 원죄요 출발점으로서의 유신시대, 그 암흑을 대변하는 최종길 교수의 억울한 죽음을 조명하는 작업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고인의 유족들은 앞으로 고인의 유작저서 출간, 고인 장서의 서울대 기증, 고인추모 장학 기금내지 재단의 설립, 기타 고인의 뜻을 기리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을 세워놓고 있다.

70년대 초반 가혹한 노동조건에 분신으로 항의한 전태일의 죽음과 유신독재권력의 고문에 의한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70년대의 수탈과 전제적 억압을 상징하고 또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무덤은 모란공원 초입의 같은 묘역 지척에 나란히 있다. 유가족은 최종길 교수에 대한 연미사를 10월 18일 오후 6시 30분 명동성당에서 봉헌하고 기일(忌日)인 19일 정오에 묘지에서 추도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1973년 10월 16일 오후 2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수사중인 간첩사건에 대하여 수사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중앙정보부는 최교수가 “동베를린에 갔다 온 것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용변 중 7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1973년 10월 19일 오전 1시 30분 자살하였다고 유가족을 기만하고 강압하여 서둘러 비밀리에 장례를 치르게 했다. 장례가 끝난 뒤인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최교수가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투신자살했다”고 다르게 발표했다.

15년 동안 갇혀 있는 죽음

최종길 교수의 불행한 죽음과 간첩이라는 발표에 대해 가족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나, 유신 직후의 살벌했던 당시 상황에서 의문의 목소리는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하바드 대학의 동료교수로 동남아 법률연구소장이었던 코헨 교수는 1년 뒤인 1974년 10월 9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종길 교수의 사인(死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적으로는 197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개최한 인권회복을 위한 명동성당 기도

회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우리의 인권주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고문치사되었다. 인권유린의 수부(首府) 중앙정보부 등은 마땅히 해체하고, 인권유린을 인정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최초의 진상규명 움직임이었다.

이어서 사제단은 그해 12월 18일에 ‘인권회복을 위해 죽은 사람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신현봉 신부 집전으로 개최하였는데, 이때 문정현 신부는 강론을 통해 최종길 교수사건을 거론, “의혹을 가진 국민에게 당국은 해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외부접촉을 제한받았던 최종길 교수의 미망인 백경자 여사(당시 40세)는 이 기도회에서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남편의 숨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입에 오르내릴 수도 없는 누명을 쓰고 갔습니다. 하느님만이 당신의 죽음을 아실 것이며, 나는 예수상 앞에 그 죽음의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고 절규했다. 이때 오태순 신부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름으로 추도사를 발표하였는데, 추도사에서 사제단이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3년 10월 불의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분노가 학원에서 폭발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당신의 제자들을, 곧 학생들을 연행, 구속하였습니다.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몸서리치는 폭행을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데려다가 똑같이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당신께서는 교수회의에서 정보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일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줄은 당신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살은 날조된 것입니다. 지금 미망인이 된 당신의 부인께서도 스스로가 의사이면서도 당신의 시체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시체는 봉인된 채, 다시는 시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조건밑에 극비리에 매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께서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당신이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말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신을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하는 기계의 조작법을 몰라 그렇게 되셨다는 말로 들렸습니다우리를 용기없는 사람들은 당신을 두고도 중앙정보부가 두려워 쉬쉬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신을 추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용기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오늘에야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당신의 추도미사를 올리게 되음을 부끄러워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통곡으로 추모하오니 원컨데 최교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굽어 살피사 우리에게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의를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옵시며,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후에도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항의와 진상규명 요구는 계속되었다. 75년 3월 1일,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가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사제단이 3월 7일 성명을 통해 “최종길 교수의 사인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한 국민은 고문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며 3월 10일 ‘근로자의 날’ 미사에서도 또 다시 언급했다. 이와 같이 재야인권운동부문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높자, 75년 3월 15일과 17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의 및 문공위 정책질의에서 당시 신민당의 송원영(宋元英), 최성석(崔成石) 의원이 사인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신치하에서 서슬이 펴렸던 중앙정보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망(無望)한 일이었다.

80년 안개 속에 '서울의 봄'이 잠시 왔을 때, 서울법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으나, 5·17의 사태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사제단의 이번 진상규명 요구는 실로 15년에 걸친 집념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사제단은 모든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끝까지 추적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사제단은 감추어진 진실이 빛 속에 드러나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땅에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더불어 같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제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또 다시 은폐와 조작으로 시간을 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역량이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을 노렸나

박정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당당한 권력기관이 되었다. 그리하여 외국에도 KCIA는 악명높은 비밀경찰조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 중앙정보부가 최종길 교수를 어떤 정략적 목표로 설정했다면, 거기에는 그에 상응할만한 상황과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1973년 10월이라는 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72년 10월에 이른바 유신정변이 있었다. 이듬해까지 그 유신체제의 안전한 존속을 위해 비상각의에서는 노동관계법 등을 개악하거나 반민주악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독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8월 8일에는 김대중 전신민당 대통령후보를 동경의 한 호텔에서 납치, 세계의 이목이 박정권과 KCIA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편 학원에서도 유신 반대투쟁이 서서히 조직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10월 2일에는 서울대 문리대에서 정보정치의 즉각중지, 유신철폐 등을 외치는 데모가 있던 것을 비롯 4일에는 법대에서, 5일에는 고려대학이 동맹휴학에 들어가는 등 확산일로를 걷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권력으로서는 김대중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성이 있었고, 동시에 유신 1년이 채 못 되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학원의 반유신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었다. 그때 수사하고 있었던 간첩단 사건과 그 사건에 최종길 교수를 의도적으로 접합시킨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이 사제단의 견해이며 또 대부분의 관심 있는 내·외국민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 가기 며칠 전 교수회의 석상에서 학생들의 처벌에 반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중앙정보부에 항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최종길 교수의 주장이 중앙정보부에 고지(告知)되었을 것은 물론이고, 최교수를 중앙정보부가 벼르고 있었을 것 또한 자명하다.

그 가족이 확인하여 기록한 양심선언에 의하면, 간첩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미 최교수가 연행되던 10월 16일 이전에 완전 종결되었고, 검찰송치를 위한 의견서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간첩사건의 수사는 '수사과'에서 했는데, 최교수에 대하여는 '공작과'에서 새로이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련사건의 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한 과(課)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은 물론이다. 최교수에 대한 수사를 '공작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동기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학원탄압이라는 것이 가족 및 사제단의 주장이다.

최교수가 죽고 난 뒤 중앙정보부측이 가족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고 했다가, 10월 25일 발표 때는 "평양에 다녀

온 사실이 밝혀지자"로 둔갑했는가 하면, 공식발표문에는 "국내조직을 대라고 하자 이에 불용 투신자살" "공작금을 목적하는 공작에 썼다는 증인이 나타나자 투신" 운운으로 끊임없이 횡설수설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타났다는 증인이나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도 처음에는 수사종결 후 보여준다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보부가 최교수에 대한 수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최교수에 대한 당국의 발표가 허구요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교수는 고문치사되었다

최종길 교수의 사후, 중앙정보부 수사단장 장송록은 가족들에게 "한 수사관은 교수님! 가족이 있는 분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회유하고 다른 수사관은 뒤로 살금살금 가서 다리를 잡는 순간 투신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1973년 11월 28일자로 된 '부회보'(제42호)에는 공지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처벌

5국 3을 차월권 직무위반 및 직무태만 견책

5국 4갑 김상원 직무위반 및 직무태만 감봉 1월

※ 비위내용

상기명 직원은 간첩용의자 최모에 대한 수사의 주무수사관 및 보조수사관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수칙을 이행치 아니하고, 용의자의 신변관리에 소홀하여 물의를 야기시킴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맡은 바 직무수행에 태만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각각 처벌을 받았음.(끝)

이는 중앙정보부가 가족에게 한 말과 신문지상에 발표한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점에서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감시 소홀에 대한 책임만을 따진다면 마땅히 상급자인 주무수사관 차월권이 하급자인 보조수사관 김상원보다 지휘책임상 더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이 징계처리의 관행인데, 이와 같이 보조수사관이 상급자인 주무수사관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하급자인 보조수사관 김상원의 행위에 더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그들은 단순한 감시소홀에 대한 책임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신문지상에는 최종길이라는 이름석자를 명백히 밝히고 '간첩'이며 '투신자살'이라고 대서특필케 하였으나 자체 부내문서인 부회보에서는 진상을 알고도 남는 자기들 한 친구들에게까지 날조하기가 낯간지러웠는지, 신문 발표에서처럼 성명석자도 못 밝히고 '최모'라고 우물우물하고 말았으며, '간첩'이라고 감히 말 못하고 '간첩용의자'라면서 '용의자'라는 꼬리를 달아 우물쭈물하였으며 '투신자살'이라는 말 또한 똑바로 한마디도 못하고 '용의자의 신변관리에 소홀' 하였다고 우물거리고 만 것을 보더라도 최교수가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용의자의 신변관리에 소홀했다"는 표현은 고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해서 투신자살케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고문을 잘못하여 치사케 한 것 또한 넓은 의미로 용의자의 신변관리에 소홀히 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만에 하나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서울법대 교수의 죽음을 놓고 견책, 감봉 1개월밖에 안 된 사실 자체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투신자살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체부검에 최교수측의 변호인과 의료진의 입회를 중앙정보부가 완강히 거부한 점, 그리고 정보부 안에서 피의자가 자살할 만큼 소홀한 감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새벽 1시30분이라면 중앙정보부의 모든 창문은 안으로 완전히 잠겨져 있는 시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창문을 열고 투신자살 운운은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이다.

'투신자살'의 정황·증거 전무

최교수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창문은 가로 1m, 세로 1m 50cm 가량의 알미늄 샷시로 되어 있다. 당시의 창문시공의 일반적인 수준과 정보부라는 건물의 설계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창문 하나의 중량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유리창 문턱의 폭은 20cm 정도로(안쪽이 10cm, 바깥쪽이 10cm) 창문턱의 안쪽은 45도 각도로 타일로 시공돼 있기 때문에 뛰어 내리려면 먼저 창문을 열고 창문턱의 바깥 쪽을 손으로 잡고서야 창턱에 올라서서 밖으로 뛰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m 50cm 정도 높이의 창문턱에 올라서려면, 변기 앞부리를 밟고, 소변기 꼭대기를 딛고 나서야 비로소 창문턱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소변을 보다가 창문턱에 올라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필요한 동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참조)

1. 소변을 보다가 창문의 잠그는 장치 쪽으로 몸을 옮긴다.
2. 창문 잠그는 장치를 손으로 푸다.
3. 창문을 연다.
4. 창문에서 손을 떼면서 창문턱 밖으로 손을 내밀어 창문턱 밖을 손으로 잡아 의지한다.
5. 창턱에 손을 걸쳐 매달려 의지한 상태에서 원발이나 오른발 중, 한발을 먼저 변기 앞부리에 옮겨 놓는다.
6. 땅에 남아 있는 한발을 마저 들어 변기 앞부리에 두발을 모아 완전히 올라선다.
7. 다시 한발을 들어 변기 꼭대기에 올려 놓고
8. 나머지 한발을 변기 꼭대기에 올려 두발을 모은다.
9. 다시 한 발을 들어 창문턱에 올려놓고
10. 다음 나머지 한발을 들어 창문턱에 모으고
11. 창턱을 잡은 손을 떼면서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며 윗창턱 내지 창문을 잡고 의지해 완전히 일어섰다가
12. 창밖을 향해 뛰어내린다.

변기가 미끄럽고, 또 익숙치 않은 건물구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가지 동작에서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동작을 하기까지에는 한 동작에 1초씩만 잡아도 12초가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교수는 잠그는 장치에 익숙치도 않았을 것이고 또 1m 62cm의 작고 뚱뚱한 몸집이며, 더구나 조사받는 도중이므로 허리띠를 풀어 놓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명의 수사관이 6m(화장실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운데 창문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며, 가족들이 사체단에 맡겨 놓은 양심선언 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뛰어내렸다는 현장을 10월 19일 날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에 근무 중이던 최종길 교수의 실제(實弟) 최종선씨가 비밀리에 극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는 유혈이나 유혈을 씻어낸 물자국의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10월 19일이라는 가을날씨, 그리고 거기가 웅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기가 남아 있거나 경사가 낮은 곳에는 물이 고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창문을 통한 투신자살이나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는 ▲ 투신현장을 촬영했을 사진사(사진) ▲ 사건현장에서 사체를 검시, 응급처치 내지 사망을 확인한 의무관의 증언 ▲ 사체를 차에 옮겨싣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옮긴 차량기사 및 수행자의 증언 ▲ 투신현장을 청소한 청소부 내지 직원의 증언 ▲ 10월 16일에서 10월 19일까지 지하조사실 경비를 맡았던 경비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들에 의하면, 10월 19일 최교수가 사망한 직후 장송록 수사단장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처음 이를동안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으나, 어제(18일)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하므로 아득한 7층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기에---투신하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나는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왔더니 투신자살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지하실에서의 고문, 물을 먹인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얼떨결에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비열한 은폐조작

사체단은 이 사건이 영원한 미궁에 빠질 수는 없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은폐조작되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것은 최교수의 친동생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정규과정 출신 직원으로서 감찰실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점 때문이다.

최교수가 죽은 뒤 중앙정보부는 그에게 사체검시에 형식적으로 입회하여 사건의 조작은폐에 협조하도록 강요하였으나 그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인단과 의료진들로 하여금 고인의 사인확인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그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하였을 때 단 1원의 보상금이라도 그들로부터 받는 것은 그들의 허위조작을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결코 받을 수 없다고 강력히 거절하면서 저항하였다 한다.

그러자 중앙정보부는 이렇게 그와 가족들을 위협하였다 한다.

“만약 끝가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물론 다른 가족과 최교수의 친지, 동료 교수, 제자들에게까지 관련여부 조사를 확대하겠으며, 따라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최교수는 죽어 있고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가족은 1. 정보부의 살인행위를 은폐하고 이로 인한 저항을 억누를 목적으로 최교수의 죽음을 누명을 씌워 최교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 것 2. 사상관계 기록에 날조된 내용을 기재하지 말 것 3. 정보부의 살인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연행, 사건을 더 이상 조작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면으로는 해줄 수 없다면서 이들 조건을 수락한다고

말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측은 막대한 액수의 보상을 제의했으나 가족들은 정보부의 발표에 결코 수긍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단호히 거부했다.

아마도 가족은 정보부가 간첩누명을 씌우는 것만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는 점에 집착하고 있었고, 정보부는 그것을 이용, 가족들(최교수의 동생들)이 검시에 입회한 양 절차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자신이 의사인 최교수의 부인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 있던 동생조차 입회하지 못했다. 그리고 변호인과 가족이 지정하는 의사의 입회요구는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든 검시절차를 마치고 나와서 입회검사(이창우 서울지검 공안부검사)와 김상현 법의학과장은 '투신자살'이 확실하다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정보부, 약속어기고 가족들 기만

뿐만 아니라 검시가 끝난 후, 중앙정보부측은 가족이름으로 된 각서(탄원서) 초안을 작성, 서명을 요구했고, 가족들은 최교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부의 요구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 강압에 못 이겨 서명해 주었는데 가족들이 기억하는 문안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중앙정보부장님,

우리는 나라를 배신한 천인공노할 간첩 최종길의 가족으로서 그가 간첩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조국을 배반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은 최종길이 한없이 밉고, 원망스러우나 살아있는 가족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디 살아 남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부장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최종길의 죄상을 신문 등에 보도하지 않고, 호적에 기재하는 등의 사상적 제한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자손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가족들의 요구를 서면으로 약속하기를 거부하고, 거꾸로 가족들에게 최교수의 명예를 지켜 준다고 기만하여 정보부의 일방적인 요구를 서면으로 판철한 것이다. 정보부는 가족들이 이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최교수의 명예유지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는 장례는 직계가족만의 가족장으로 하고, 가족 이외의 동료교수, 제자 등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가족들은 이 당시 매순간 정보부측과의 대화내용을 양심선언 또는 일기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기록해 놓고 있다.

10월21일 아침에 당국의 엄중한 감시 속에 장례를 치렀다. 사체가 안치돼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보부 직원에 의해 철저히 경계되었다. 정보부측은 서울대 앞 통과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 기동경찰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장례행렬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모란공원의 장지(葬地)에는 가족만이 참석했다. 일꾼들이 "무슨 가족들이 곡도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했지만, 가족들은 입술만을 피가 맷하게 깨물 뿐 말을 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난 뒤 미망인이 말했다.

"최교수가 쓴 책의 원고가 다 끝나가는 데, 조교에게라도 완성시키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장남 광준(지금은 커서 아버지가 유학갔던 웰른대학에 유학중)이 말했다.

"엄마, 그 책 쓰지 말라고 해, 내가 다음에 커서 꼭 쓸테야."

이렇게 최교수의 사인은 은폐·조작되었고, 최교수의 장례는 또 이렇게 쓸쓸히 치러진 것이다.

정보부가 한 약속

가족들이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보부의 요구에 따른 것은 오직 한가닥 최교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자 정보부측은 태도를 표변했다.

"이번 사건에 가족께서 우리와의 모든 약속을 지켜 주셨고, 침묵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체 매스콤에 보도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드리려 했으나 여건이 달라졌다. 일본신문에 사망기사가 났다. 일가정도 아닌 국가에서 살인의 비난을 받고 침묵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표변의 이유였다. 과연 10월 25일의 중앙정보부 발표는 신문에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적발'이라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보도되었지만, 그 내용은 '셋 구속, 17명 입건, 31명 경고'의 정치성 짙은 발표였다. 그리고 최교수에 대해서 의도적인 명예훼손이 분명하게 드러날 만큼 장황한 죄상을 근거나 증거도 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동아일보』의(10월25일자) 최종길 교수 관련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최종길(42, 구속수사중 사망)-이재원(미체포)과 중학 동기동창으로 서울법대 대학원을 나와 57년 유학에 유학, 58년부터 62년까지 서독 웨른대학에 연수중 58년 중학 동창이며 북한의 프랑스공작책인 노봉유(盧鳳裕·43)와 접촉, 포섭돼 동독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60년에는 이재원에게 인계돼 동독을 거쳐 평양에 가서 20일간 간첩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 공작금 2천달러를 받은 후 서독으로 돌아왔다. 62년 이재원으로부터 학원토대를 구축할 것을 지령받고 귀국, 서울대 법대교수로 취직한 뒤, 67년까지 이재원에게 연2회 사업보고를 했다. 70년 미국에 가 다시 북한 공작원과 접촉, 72년 귀로에 서독 웨른에서 약 1개월간 머물며 이재원과 접선했다. 금년 10월17일, 중앙정보부에 검거돼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창문에서 투신자살했다."

정보부의 발표는 최교수 사망 전후에 가족들에게 한 말과는 상치되거나 확대 과장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죄상만 나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조직을 구축' 운운하여, 은근히 학원에 대해 간첩사건조사를 명목으로 한 위협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들에게 했던 말과의 상치점 내지 발표가 거짓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기록에 적어놓고 있다. 이렇게 하여 가족들과 정보부 사이의 약속은 정보부에 의해서 파기되고, 최교수는 죽어서 간첩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결국 최종길 교수의 고문치사와 은폐조작 및 명예훼손은 각각의 문제라거나 따로 떼어져 진행된 것이 아니라, 최종길 교수의 죽음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을 사전예방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저항을 탄압하는 구실을 마련키 위해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고 간첩으로 조작한 각본에 불과한 것이다.

자유·명예 존중한 '법대인'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대해 하바드대학의 코헨, 라이샤워, 박스타 교수는 '그는 애국자였으며, 위대한 학자요 우리들의 친구'였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최종길 교수가 결백과 함께 공

작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학자요 법대교수로서 명예를 지키고자 저항하다가 고문치사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의 모습을 더듬어 살펴보기로 한다. 1969년 9월5일자 『한국일보』는 3선개헌 반대를 위해 단식투쟁을 하는 학생과 그것을 만류하는 교수들의 모습을 취재 보도하면서 “스승도 울고 학생도 울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학생과장 최종길 교수가 농성중인 도서관 2층을 향해 통곡과 같은 호소를 시작했다. ‘학생들과 의사가 충분히 표현된 이상 이제 집에 돌아가 달라…’ 파리한 얼굴의 제자들을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서는 교수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고, 스승의 팔에 의지한 제자들은 ‘왜 우리는 아래야만 합니까’ 라면서 울고 있었다.”

최종길 교수는 70년에 하바드 온칭에서의 연수차 미국에 갔다가 72년에 귀국했다. 이때 동료교수들은 그의 하바드 잔류를 권유했다. 이때 최교수는 “돌아가서 법대생들의 배움의 의지에 불타는 또랑또랑한 눈망울 앞에 서는 것만이 내 소망이요 소명”이라면서 뿌리치고 귀국했다고 한다. 그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또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법대를 참으로 사랑했던 것 같다. 서울법대에서 도서관장을 할 때에는 미국과 서독 등 외국에 요청, 수백권의 법률관계 서적을 기증받아 도서관의 내용을 알차게 만들었다.

최종길 교수는 독일의 쾰른대학에서 케겔교수의 지도로 29세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종길 교수는 민법학자였다. 가족과 법학계의 동료들은 그가 민법학자라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가 결코 북한에 동조할 수 없는 사람임이 입증된다고 말한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최종길 교수는 더욱 절절하다. 최교수는 영화 「스파르타쿠스」에서 스파르타쿠스의 아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스파르타쿠스를 향해 ‘당신 아이는 자유롭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고도 눈물지울 만큼 자유를 사랑하고 명예를 존중했다고 한다. 6. 25 때는 중학생으로 그의 형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 도중 비행기의 기총소사 때문에 모자를 잊어버렸다. 모자가 없으면 인민군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은 그의 뺨을 후려치면서 모자를 찾아 쓰고 올 것을 요구했다. 최교수는 아비규환의 장소로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돌아가 찾아쓰고 돌아왔다. 바로 이런 점만 보아도 그가 결코 간첩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실이 과연 밝혀질 것인가

1974년12월21일자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서울의 반정부세력, 더욱 신랄하고 눈에 띠게 증가했다’는 기사에서 “1년 전에 남한에서 뛰어난 한 교수가 한국 중앙정보부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불가사의하게 죽었다. 비밀경찰은 그 교수가 자살했다고 말했으나 그의 가족은 고문으로 죽었다고 믿고 있다. 그 사건은 통제받은 한국의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번 주 처음으로 남한의 1천여 가톨릭 신자들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서울 명동성당에서 추모미사를 갖고, 공개적으로 최교수의 죽음을 거론하고,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74년12월18일의 추도미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14년만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사인규명을 검찰에 요구했다. 사제단은 오직 진실이 밝혀지고,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온 국민의 의지가 확인되기를 바랄 뿐, 보복이나 특정기관이 달리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최교수와 그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 가족의 뜻에 따라 일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은폐·조작된 가운데 15년 가까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그 가족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은 언젠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하루도 편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제단은 어쩌면 그런 불안과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케 하는 것도 이번에 사인규명을 요구하게 된 이유의 하나라는 것이다.

현재 최교수의 유가족으로는 미망인 백경자(52세)와 장남 광준(64년생, 쾰른대학 유학중), 장녀 회정(67년생, 성심여대 영문학과 4년 재학)이 있고, 미망인은 사건 직후부터 의사로 취업,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제 최교수의 명예가 회복된 가운데 떳떳한 추모 행사를 금년부터 치를 수 있기를 가족들은 바라고 있다.

4. 주요신문기사

(1) 평화신문

① 평화신문 1988. 10. 9.~15.

73년 '중징'서 조사만다 의문의 죽음 "서울대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정의구현제단 "사인은폐 위해 간첩누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6일, 19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된 의혹이 짙다고 검찰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사제단은 최종길 교수의 사인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최종길 교수에게 간첩의 누명이 씌워졌다고 주장하고 정부 또는 당해기관이 공식사과를 통해 그의 명예를 정식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사제단은 74년 12월 18일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래 14년의 추적 끝에 유가족들의 증언과 기록 및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 고문치사가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진상조사에 필요하다면 관련자료의 제시는 물론, 관련인사의 증언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제단은 진실은 공소시효의 차원을 뛰어넘어 공명정대하게 밝혀져야 하며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등 모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제단은 진실의 규명은 고문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누명을 쓰고 죽은 최종길 교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함일 뿐 보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종길 교수가 자살이 아니라 고문치사되었다는 심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사제단은 의사인 미망인을 비롯 가족 및 변호인에게 사체를 확인시키지 않은 것, 투신 현장을 공개하지 못한 것, 최교수에 대한 조사를 공작파에서 한 점, 7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부회보(42호)가 두사람의 수사관에 대한 차등책임을 보여주고 있어, 당초의 발표가 허위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사제단은 사건 직후 중앙정보부가 사인(死因)을 조작, 은폐하고 최종길 교수에 대한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서, 조작과 은폐 및 명예훼손의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인사 20여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제단이 밝힌 관련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차철권(사무관, 최종길 교수 주무수사관) △김상원(주사, 보조수사관) △변영철 등 당시 5국 10과 직원 전원(고문은 교대로 관여) △고(高) 담당조사계장 △안홍용(중령, 담당 공작과장) △장송록(이사관, 수사단장) △안경상(수사국장) △조일제(차장보) △김치열(차장) △이후락(부장) △이병정(감찰실 감찰과장) △손중호(감찰실장) △배명갑(감찰실 부실장) △허만위(감찰실 행정과장) △이용섭(감찰실 수집과장) △서철신(5국 9과장) △정낙중 등 5국 수사계장등 (감시 및 은폐) △서재규(감찰실 감찰과 계장, 고문수사관을 조사) △김명옥(감찰실 감찰과 직원) △오수창(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김상현(동 법의학과장) △이창우(서울지검 검사, 검시에 입회)

* 직책은 사건당시의 것임.

② 평화신문 1988. 10. 16.~22.

최교수 사인규명 관심 고조

"진실 15년 은폐는 검찰의 직무태만"

속보=「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6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김두희검사장에 '최종길 교수 사인진상의 규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요구서를 제출, 평민당은 7일 김수일 부대변인 이름으로 '구시대의 죄악들을 정부가 만일 계속 은폐하거나 방치하려 한다면, 이 정부도 결국 구시대의 죄악들과 동렬(同列)에 놓일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백남치 부대변인도 8일 성명을 통해 "진행중인 국정감사를 통하여 전력에 의한 폭압적 살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어떠한 비리와 폭력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은 정부 당국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표간사·조준희)도 8일 성명을 통해, '자금 및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교수가 고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 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15년 이상 지연 된 것은 검찰의 고의적인 직무태만에 그 책임이 있다... 사건진상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살인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김상수 형사제1부장은 중앙정보부로부터 사체부검 및 사망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8일에는 사제단의 김승훈·오태순 신부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들었으며, 10일, 11일, 12일에는 고 최종길 교수의 실제 최종선(44)씨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사제단으로부터 법률적인 제문제에 대한 검토와 운반을 위임받은 민변의 고영구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두한 김승훈 신부는 최교수가 숨진 현장사진에 최교수가 없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상의 철저규명을 요청했다. 9일부터 검찰에 출두, 증언하고 있는 최종선씨는 최교수가 자살했다고 하는 시각에서 몇 시간 뒤에 현장을 확인했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최교수는 결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에 의해 타살되었으며, 고문살인의 죄상을 은폐하기 위해 최교수는 죽은 후에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사건 직후에 자신이 쓴 수기(양심선언)의 기록을 열거하면서 주장했다.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4일에 있는 것 등을 비롯, 최종길 교수 사인규명과 관련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③ 평화신문 1988. 10. 16.~22.

최교수 사인 증거 못찾아

가족들 공소시효 관계없이 진상 끝까지 밝혀야

<속보> 지난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18일 공소시효 만기를 넘겼지만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채 '진실'의 규명 차원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 지검 형사1부(김상수 부장검사)는 1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최교수가 타살됐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그동안 사제단의 김승훈 신부, 최교수의 동생 최종선씨, 김상원씨 등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12명, 부검의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상현씨, 변사사건 지휘검사였던 이창우씨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교수 유족과 사제단측에서 주장한 간첩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진상조사를 요구한 유족들 및 재야 범조인들은 18일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공소시효 만기에 따른 견해를 밝혔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질신문 등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검찰측의 노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최교수의 부인 백경자(52)씨와 동생 최종선씨 등 유족들 역시 "비록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15년 동안 묻힌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표했다.

유족들과 그 친지들은 18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합세웅 신부 집전으로 추모미사를 집전했으며, 19일 정오에는 모란공원 묘지에서 안경철 목사 집례로 추도예배를 올렸다. 추모미사와 추도예배에는 서울법대 이수성 학장을 비롯, 교수와 학생, 가족, 친지들이 참석했으며, 고인이 재직하던 서울법대에서도 19일 분향소가 설치되어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15년만의 추모의식이 행해졌다.

(2) 한겨레신문

① 한겨레신문 1988. 10. 7.

"73년 중앙정보부 연행조사중 투신자살 최종길 교수 고문으로 죽었다"

- 정의구현사제단 이후락씨등 22명 고발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6일 지난 73년 10월19일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전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의 죽음과 관련, "최교수는 중앙정보부가 간첩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숨진 것"이라며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와 차장 김치열씨 등 관련자 22명을 고문치사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제단은 고발장에서, "당시 최교수가 교수위원회에서 유신철폐를 외치는 시위 대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정보부에 항의하자고 주장한 일과 관련, 정보부가 최교수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시켜 학생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학원탄압의 구실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화장실 창틀 높이가 1.5m나 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수사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신자살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시 정보부 감찰실에 근무하던 최 교수의 친동생이 사건 발생 직후 화장실 창문 밑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는 피를 씻어 낸 흔적조차 없었고 유족들이 사체부검장소에 입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수사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② 한겨레신문 1988. 10. 20.

최종길교수 타살 여부 못밝혀

-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전 서울법대 교수 최종길(당시 42)씨 사건의 진상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김상수 부장검사는 1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김승훈 신부와 최 교수의 동생 종선씨, 당시 중정 감찰부장 이병정씨를 비롯한 수사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자살 또는 타살 여부를 밝혀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 교수의 간첩조작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계자는 최교수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지만 최 교수가 진술서와 신문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숨져 역시 진상을 가릴 수 없었

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최 교수가 고문에 의해 사망했더라도 19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가 지나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은 힘들다”고 밝히고 “그러나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③ 한겨례신문 1988. 10. 21.

‘최종길교수 죽음’ 미궁에 빠질 것인가

천주교사제단, 검찰 재조사발표에 6가지 의문점 제기

故 최종길 교수의 15주기 추도식이 지난 19일 정오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묘지에 있는 고인의 묘소에서 있었다. 고인의 미망인 백경자(52)씨와 학내동생 최종선(43)씨, 그리고 고인이 재직했던 서울법대 이수성 학장과 박병호 교수, 최송화 교수 등 친지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전의 고인을 기렸다.

이보다 앞서 18일 저녁 6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고인의 연미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해 이미 어떤 예단과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인상을 풍겼으며, 어떤 담당검사는 밝혀야 할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차 분명한 인식도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성명은 이어서 △ 공소시효문제와 관계없이 앞으로 대검찰청이 직접 조사해 줄 것 △ 안전기획부가 제2의 은폐 조작에 가담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은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의문사항들은 동생 최종선씨의 주장과도 합치되는 내용이다.

첫째,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의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최 교수에 대한 간첩조작기도를 했다. 이는 최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진술서, 자필진술서, 육성녹음 등 증거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데서 입증된다. 간첩혐의 부분이 무혐의라면 최교수는 투신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 치사되었음이 더욱 분명하다.

둘째, 중정이 제시한 최 교수의 투신자살 현장사진은 최 교수가 반듯이 누워있는 흑백사진 2매로서, 당시 중정 관계자가 유가족에게 설명한 내용 “뒷머리가 깨지고 양쪽 손과 발이 부러졌다”과도 상이할 뿐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연히 천연색으로 상세하게 전후좌우, 또는 치명적인 손상부위를 근접 촬영해야 하는 것이 변사체 처리의 상식인데, 이 사진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현장을 은폐·조작하기 위한 사진임이 분명하다.

셋째, 지난 17일 오전 최종선씨와의 대질신문에서 이병정 당시 감찰과장은 “통행 금지시간 중에 중정에 도착, 투신현장을 보았으나, 이미 사체도 없었고 헛자국은 물론 물로 씻어낸 적도 없었다”고 말한 점.

“의아해서 옆에 있던 5국 수사관에게 사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앰뷸런스로 병원에 옮

겼다”고 말한 점.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점은 중앙정보부 조직법과 직무규정에 의거 부원의 범죄를 조사하는 공식적인 책임자인 감찰과장의 현장조사 이전에 이미 사체가 치워지고 정리됐다는 점에서, 조사 전에 벌써 이후락 당시 중정부장을 정점으로 사건은폐가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이씨의 진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를 옮기기 전 병원 등 제3의 장소로 먼저 옮겼을 가능성이 같다. 사체운반에 앰뷸런스가 이용됐다는 점도 새로운 사실이다.

넷째, 지난 10월17일 이병정씨는 또 “감찰과장으로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시 안경상 수사5국장, 장송록 수사단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관련조사관 5명을 중징계토록 전의했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이씨의 진술은 최교수에 대한 고문에 5명의 수사관이 참여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2명(부회보 42호 발표)이 아니라 5명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최종선씨는 사건 직후 이병정 감찰과장이 쓴 메모지(중앙정보부 서식 가-363, 71. 9. 3) 한 장을 검찰에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 장지 위치 (2) 가족 초청 범위 (3) 장례 방법 등이 적혀진 이 메모지는 당시 5국장인 안경상(현 감사원 사무총장)씨로부터 이병정 감찰과장이 지시 받은 내용을 메모한 것.

이씨는 첫 대질신문에서 자필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2차 대질신문에선 이 메모지가 자신의 글씨임을 확인했다.

15년 전의 메모지 한 장까지도 소중히 보관해 온 최종선씨는 지난 73년 1월 중정에 들어가 81년 1월 그만 두기까지 7년여를 이 기관에서 근무해 왔다.

최씨는 “이 메모지는 자신이 형님의 무죄와 타살임을 증빙할 결정적인 단서 17가지 중의 한 가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서 검찰이 발표한 “7층 호텔방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2개뿐인 6층에 정보부장 방이 있었기 때문에 내빈 방문과 고문수사로 인한 피의자들의 고함소리 등을 고려, 그 위층엔 본래 조사실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합동신문조사실’이라는 것도 중정 남산분청엔 애초부터 없었으며, 당시 합동신문조사실은 이문동 본청에만 있었다는 것.

최씨는 자신이 중정에 근무한 7년여 동안은 “살얼음을 뺏는 세월이었다”면서 주변 관련자와 상부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조심스런 생활을 해왔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최씨는 그 한 예로 “자신이 습득한 부회보 42호마저도 그간 형수님(백경자 미망인)의 배갯속에 숨겨서 보관해 왔다”는 것.

지난 19일 추도식을 끝낸 최종길 교수 유가족들은 가족회의를 열고, 다시는 고인과 같은 반인륜적 살인조작 음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고문방지를 위한 범시민 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고 최종선씨는 전했다.

“고문받지 않고 고문하지 않는다”는 목표 아래 이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3) 동아일보

① 동아일보 1988. 10. 16.

崔교수동생 · 前中情과장대질

서울大교수 死因수사 검찰, 李厚洛씨 召喚검토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한 서울대 崔鍾吉교수의 사인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金相洙부장검사는 15일상오 崔교수의 동생 鍾善씨(43.전 중앙정보부감찰실근무)를 불러 崔교수 사망당시의 의문점에 대해 진술을 듣고 당시 中情감찰과장 李병정씨와 대질신문했다.

崔씨는 검찰에서『사망당일인 73년 10월 19일 투신했다는 사고지점에 가보았으나 퓁자국 등 투신흔적이 전혀 없었다』며『모든 출입구 및 창문을 철저히 잠그게 돼 있는 중앙정보부의 관행상 바로옆에서 감시하는 수사관을 따돌린 뒤 잠긴 문을 열고 투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崔씨는 또『형 사망 직후 중앙정보부는 사망사실을 함구하도록 온갖 협박과 희유를 했었다』며『중앙정보부의 태도로 보아 형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에 의해 숨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崔교수 사망직후 중앙정보부가 보인 태도는 崔교수가 자살했더라도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볼 수 있어 崔교수가 고문치사 당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그러나 이 밖의 다른 정황과 관계자들의 진술등을 모두 종합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진정서에 제출한 관련조사대상자 22명중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을 조사했으며 李厚洛 전중앙정보부장을 소환조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崔鍾善씨와 당시 감찰과장 李씨 등을 한 차례 더 대질신문한 뒤 이 사건 공소시효만료일인 오는 19일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② 동아일보 1988. 10. 18.

崔교수 「投身」 현장서 퓁자국 등 발견 못해

- 당시 中情감찰과장 진술 -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서울법대 崔鍾吉교수의 사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金相洙부장검사)는 19일중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15일 崔교수가 조사받다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중앙정보부건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던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과장 李병정씨와 崔교수의 동생 崔鍾善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날 대질신문에서 李씨는『사건발생 2시간여가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으나 崔교수는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간 후였고 투신현장에서 퓁자국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의 조사결과 사건발생직후 숨진 崔교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겼다고 한 것과 李씨의 진술이 어긋난 점 등에 대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李씨는 또 이사건과 관련,『당시 安景相수사국장과 장송록수사반장등 2명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수사관등 5명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으나 결과는 관련수사관 2명만을 징계처리했다』고 진술했다.

③ 동아일보 1988. 10. 18.

검찰 "崔교수 他殺여부 못가려"

- 時効관계없이 수사 -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전서울법대 崔鍾吉교수 사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金相洙부장검사는 1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진정서 접수 이후 여러 사람을 불러 대질신문 등 조사를 벌였으나 李厚洛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을 형사처벌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金부장검사는『그동안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과장 李병정씨, 부검의사등 중앙정보부관계자 10여명과 崔교수 동생 鍾善씨(43.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근무) 등 가족, 진정서를 제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등을 모두 불러 조사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金부장검사는 이어『가족들 주장대로 이 사건이 살인일지라도 19일이 공소시효 15년이 끝나는 날이지만 가족 등이 철저한 사인규명을 요구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④ 동아일보 1988. 10. 19.

崔鍾吉교수죽음 「풀리지않는 疑問」

결론없는 檢察수사결과 1차 발표

지난 73년 10월 19일 당시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서울법대 **崔鍾吉**교수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대로 「투신자살」 한 것인지, 아니면 朴鐘哲군 고문치사사건처럼 「고문에 의한 타살」 인지의 의문이 사건발생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진정에 따라 사인재규명에 나선 검찰은 공소시효(15년) 만료일인 18일 오후 『**崔교수**가 타살됐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해 **崔교수**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1차 검찰조사결과에서도 밝혀지지 못했다.

검찰이 「자살」과 「타살」을 가리지 못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시각에 金勝勳 吳泰淳 咸世雄신부 등은 서울明洞성당에서 **崔교수**의 유가족 동료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崔교수**의 원혼을 달래는 연미사를 올리며 『**崔교수**의 죽음은 독재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재확인』하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사인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실정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났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법, 역사의 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崔교수**의 부인 白慶子씨(52)는 15년전 당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부인 白씨와 가족들은 검찰의 1차 조사결과에 큰 실망을 표시하며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투신자살했다는 현장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전해주는 현장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것.

당시 정보부가 찍었다는 사진은 반듯이 누워있는 **崔교수**의 시신모습과 **崔교수**가 뛰어내렸다는 화장실 내부등 3장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崔교수**가 투신자살했다는 73년 10월 19일 새벽 5시반경 남산분청사에 들어간 **崔교수**의 동생 **崔鍾善**씨(당시 중정감찰실근무)가 현장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수사팀이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이다.

崔씨는 당시 감시하던 동료들의 눈을 피해 아침 8시경 사건현장에 가보았으나 핏자국 등 투신흔적은 아무데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통금해제(새벽4시)전 사건현장에 도착했다는 李병정 당시 감찰과장도 이번의 검찰조사에서 『현장에서 핏자국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셋째 당시 감찰실에 근무해 남산분청사의 내부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동생 **崔씨**에 따르면 **崔교수**가 투신자살했다는 건물 6층에는 정보부장의 집무실이 있고 7층에는 조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층 조사실에서 조사받던 중 화장실에가 투신자살했다』고 발표된 점으로 미루어 자살로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중인 부검자료에 따르면 최교수의 직접사인은 갈비뼈 파손에 의한 심장파열과 두개골 골절로 나타났는데 7층에서 투신자살했을 경우 갈비뼈 파손에 의한 심장파열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투신자살」이라면서도 사건 발생직후 정보부의 관계자들이 충동원 되다시피해 가족들을 회유하려했던 점 등 **崔교수**의 가족들이 열거하는 의문은 끝이 없다.

崔교수의 가족들은 사인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당시 정보부가 『간첩단 사건과 관련, **崔교수**를 수사중이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崔교수가 숨진 6일 후인 73년 10월 25일 金致烈 당시 중앙정보부차장은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사건」을 발표하면서 「**崔교수**는 서독 '쾰른'대 유학중 중학동창인 이 사건의 주범 李右元, 盧鳳裕(미체포)에게 포섭돼 동독을 거쳐 平壤에 가서 20일간의 간첩 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조사를 받다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崔교수**의 가족들은 △ 주범이 잡히지 않은 마당에 포섭된 사람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으며 △ **崔교수**는 검거된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물어볼 것이 있으니 같이 나와달라」는 安홍용 당시 공작담당과장의 부탁으로 동생 **崔鍾善**씨가 함께 갔고 △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음에도 「구속수사중」이라고 발표한 점 △ 또 **崔교수**의 진술서 등 **崔교수**와 관련된 단 한장의 수사기록도 없는 사실 등으로 미뤄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崔교수**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의 관련자료로 둑어넣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崔교수**의 동생 **崔鍾善**씨는 **崔교수**를 정보부에서 부른 것은 **崔교수**가 72년 귀국, 유신체제를 교수회의 석상 등에서 맹렬히 비난하며 정보부의 학원과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자주 지적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崔교수의 「유럽거점 간첩단」 관련여부에 대해 검찰은 이번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당시 중정수사관은 **崔교수**가 간첩사실을 자백하고 자술서를 쓰기 전에 자살했기 때문에 **崔교수**의 자필조서 등 관련기록은 없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崔교수**와 「유럽거점 간첩단사건」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유일한 것은 『담당수사관이 **崔교수**로부터 들었다』는 말뿐인 셈이다.

결국 검찰의 1차 조사는 **崔교수**의 죽음이 「자살」이냐 「고문에 의한 타살」이냐의 여부, **崔교수**의 「유럽거점간첩단사건」 관련여부 등 **崔교수**의 죽음을 둘러싼 두 가지의 의문 중 어느 하나도 명백히 밝혀주지 못했다. 그러나 **崔교수**의 죽음과 관련된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 중 일부가 명백한 물증이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사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진수기자】

⑤ 동아일보 1988. 12. 28.

HR 또 하나의 의혹 「교수 의문死」

남산외부장들 〈72〉

죽기살기로 당락을 다투는 선거판에선 말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유신말기같은 살얼음 시국에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78년 12월 10대총선에서 무소속후보 李厚洛과 맞선 共和黨후보 徐英洙. 그는 열세에서 헤어나기 위해 극약처방으로 나왔다.

『이후락씨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공자랑을 하고 있으나 그건 정치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대단치 않은 것이고 기실 73년에 남북대화가 깨져 실효도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북이 그 직후로부터 땅굴을 팠다는 사실이야말로 7.4성명이 별개 아니라는 증거아닙니까』

徐英洙는 蔚山유권자들의 동요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거물 야당 HR를 향해 「혜딩」했다.

10대 總選서 공격

『야당 정치인 金모씨(김대중)가 밉다고 납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에 있던 金씨가 밉기로서니 태평양 물속에 빠뜨리려고 꾸민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에는 與野가 있고 서로 충고 견제 비판해야하는 법인데 정적을 말살하려는게 말이나 됩니까』

蔚山 三南面 장터와 농소국민학교에서 두차례 김대중납치사건을 터뜨렸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鄭一亨발언을 제외하곤 국내 공공장소에서 처음 공표한 내용이었다. 물론 당시 언론은 이런 유세조차 보도 할 수 없었다.

농소국교 유세가 끝나자 현지 中情책임자가 徐를 불러 말했다. 「도대체 집권여당후보가 정신이 나갔느냐. 韓日간 문제가 났을 때도 공권력이 관여 안했다고 하는 판에...」 라며 나무랐다.

HR도 유세가 끝나고 잔뜩 찌푸린 채 자기 참모들에게 일갈했다. 「徐英洙는 두 가지에 관해 책임질 수 없는 소릴 함부로 했어. 법에 따라 처벌 받을거야」라고.

徐는 이 말을 전해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HR의 보복이 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개표가 시작되고 HR당선이 확정되자 徐는 찾아갔다. 「선거기간중에 한 얘기니 이해해달라」고 통사정했다. 인신공격을 한 데 대해 사과도 했다.

그러나 6 개월후 문제가 터졌다. 徐는 지금도 HR측이 「선거관련 제소기간」을 넘겨 徐의 반격이 불가능하게 묶어놓고 보복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79년 여름밤 徐가 서울 동작동 집에서 자고 있는 참에 정보형사들이 들이 닦쳤다. 지프에 태워 蔚山으로 끌고 갔다. 유언비어 유포로 긴급조치9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언비어란 「7·4성명발표가 정치쇼」라고 한 대목. 金大中 납치폭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법정공방에서 金大中이름이 들먹여지면 오히려 시끄러워질까 우려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釜山지검에 넘겨졌다. 1심에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았는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徐는 무죄를 주장하며 大邱고법에 항소했다.

『도무지 판사도 중대있게 판결을 내릴수 없어 고민하는 것이 역력했다. 변호사에게 소신있는 판결이 어렵다는 투로 고백도 했다. 中情이 뒤에서 작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쪽은 지연작전으로 자꾸만 재판기일을 연기해 나갔다』(徐英洙씨증언)

그러자 10·26총성과 함께 유신시대가 달혀버렸다. 대통령 朴正熙가 역사속에 묻히면서 긴급조치도 사라졌다. 徐英洙는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었다.

73년 殘害 하던 HR權道에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尹必鏞사건과 金大中납치사건만이 아니었다. 서울大법대 崔鍾吉교수사망사건도 정보부장 HR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리고 南山감찰실에서 벌어진 가짜정보원 구타사건이 HR을 수령으로 빠뜨렸다.

“7층서 投身”발표

崔교수(당시42세)가 南山에 불려간 것은 73년 10월 16일 오후 1시 45분. 그는 마침 중정감찰실에서 근무하던 동생 鍾善(당시29세)과 함께 다방에서 만나 남산으로 갔다.

동생 鍾善은 그 전날 5국 安과장으로부터 『유럽거점 간첩단사건의 李재원 수사에 필요하니 형의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를 들은 터였다. 鍾善은 그 직전 선배요원 朴모로부터 『수사팀에서 이재원과 중학동기이며 유럽유학시기가 비슷한 鍾吉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귀뜸도 들은 적이 있었다.

동생 鍾善의 얘기를 들은 崔鍾吉은 『조사목적이 이재원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게 아니냐』면서도 수사엔 협조하겠다고 했다. 동생은 『형님이 지난번 교수회의에서도 강경발언을 하시고 평소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해 정치적으로 그런지도 모르지만...』이라며 위로했다.

형제는 16일 오후 영원히 헤어졌다. 동생 崔鍾善은 사흘이 지난 19일 아침 형의 죽음을 통보받았다.

수사단장 長松祿이 황망히 손을 내밀며 설명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나는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 벌어진 일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투신자살했다는 얘기요. 처음 이를동안 범행을 부인해 지하실서 조사했으나 어제부터 순순히 자백해 아득한 7층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하던중 벌어진 일이고. 용변을 보겠다고 해 변소엘 데려갔더니 감시원이 한눈파는 사이에 변기를 밟고 창문턱에 올라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교수님, 가족도 있고 하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고 회유도 했는데 투신하셨다는 겁니다』

검찰수사 흐지부지

崔鍾善은 고문치사를 확신했다. 가족의 시체확인도 거부했다. 형은 간첩혐의를 시인하는 자필 기록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崔鍾善은 투신현장이라는 데를 가 보았으나 흙자국은 물론 물로 씻은 흔적도 없었으므로 그는 형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국회도 언론도 대학도 외국대사관도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마땅치 않은 현실임을 절감했다. 어디에고 유신의 두꺼운 벽이 벼티고 있었고 정보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었다.

中情은 10월25일 『서울大法大교수 崔鍾吉은 정보부에서 간첩임을 자백, 여죄를 조사받

던 중 화장실 창문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날 동생 鍾善은 세브란스 정신병동에 쇼크 정신질환을 가장해 입원했다. 자신의 안전을
꾀한 궁리 끝에 솔제니친의 소설 「수용소군도」가 떠올라 정신병동을 적소로 택했다. 정보
부의 감시와 통제가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鍾善은 사건 전모를 시간대별로 기록했다.

그는 이듬해 12월 明洞성당으로 찾아갔다. 인권회복기도회가 열리기 직전 사제단을 찾아
가 양심선언이라고 밝히고는 기록을 건네주었다. 사흘 뒤 뉴욕 타임스가 「의문의 죽음」을
보도했다.

정신병동을 나온 崔鍾善은 81년 1월까지 中情에 계속 근무했다. 『형의 간첩혐의가 분명하
다면 나는 쫓겨 났을 것이다. 형은 유신에 맞서 싸우다 죽은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는 88년 10월 공소시효 15년 완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형 崔鍾吉의 伸冤을 호소했다.
6공 검찰이 손을 뱌으나 다시 흐지부지 끝났다. 검찰의 수사 결론이란 『자살이냐 타살이
냐에 대해 아무런 확증도 잡을 수 없었다』 『간첩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객관적 증거
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 교수의 아까운 죽음은 영구미제사건이 되었다. 당시 中情간부들은 기자에게 『냉전체
제의 희생이지만 자살은 분명했다』고 일치된 주장을 했다.

그러나 가족은 말한다. 『법에 시효는 있을지언정 하느님의 세계에 시효란 없다』 『정의
가 살아 있는 한 원한의 의문사는 풀리고 만다』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정보부장 HR에게도 비극으로 작용했다. 8월의 金大中 납치사건으로
온통 뒤풀어진 판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뒷날 美國측 기록에 밝혀진 것처럼 「한
교수의 의문의 죽음」은 美國도 관심을 쏟았으므로 HR 입장은 더욱 곤란해졌다.

權坐에 「검은 그림자」

설상가상. 불운은 겹쳐오는 것일까.

참으로 대통령 朴正熙가 크게 노해 HR과 감찰실장 孫宗浩를 친히 불러 親鞫을 벌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때 터졌다.

73년 11월 11일 을씨년스러운 날씨였다. 때아닌 진눈깨비가 훌날리고 있었다. 그날은 월드컵 예선에서
맞붙은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축구시합이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날이기도 했다.

운동장 로열박스에 앉아 축구를 보던 감찰실장 孫宗浩는 무전연락을 받았다. 青瓦臺로 들어오라는
전갈이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고 있었다. 키다리 선수 金在漢이 막 선취골을 뽑을 참이었다.

아쉬웠지만 孫은 대기중인 차에 올라탔다. 잠바를 벗고 넥타이를 갈아맸다. 그때 또 무전이 왔다.

【김충식】

(4) 한 국 일 보

① 한국일보 1988. 10. 8.

검찰, 崔교수 死因 조사착수

고문치사 의혹 기록검토 뒤 李厚洛씨 등 소환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전서울大 법대 崔鍾吉 교수의 사
인을 규명키 위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7일 崔교수변사사건에 대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진정사건을 철저히
조사키로 결정, 金相洙 형사 1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검찰은 금명간 진정서를 제출한 사제단관계자들과 崔교수의 유족등을 불러 정확한 진정내
용과 사건경위를 듣고 당시 변사사건처리기록과 정밀 대조한 뒤 李厚洛 전중앙정보부장 등
피진정인 22명에 대한 소환여부 및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진정내용대로 崔교수가 자살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가 이미 80년 10월 19일자로 만료됐다』며
『따라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수사나 관련자들의 처벌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인규
명 등 진상조사차원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제단측이 검찰에 제출한 것도 고발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진정서』라
고 말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진정서처리의 관행에 따라 진정내용
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趙準熙변호사)은 이날 民辯사무실에서 긴급간
사 모임을 갖고 『사제단의 요청에 따라 사제단이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崔교수는 자
살이 아니라 고문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짓고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성
명을 내기로 했다.

民辯은 또 『현재로선 살인으로 보아야 할 지 고문치사로 보아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가려야 할 것』이
라고 밝혔다. 民辯은 또 『검찰은 시효가 지났다고 사전에 판단하지 말고 살인죄의 시효 만
료일인 오는 19일 이전까지 사실조사를 끝낸 뒤 살인죄의 판단이 서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한국일보 1988. 10. 8.

“혼자剖檢입회하면 거액준다” 회유

崔鍾吉교수 가족 주장

『崔鍾吉교수가拷問에 의해 숨졌다』는 주장은 『崔교수가 투신자살했다』는 당시 수사당국의 발표가 현장 정황으로 미루어 믿을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崔교수의 가족들은 ▲ 중앙정보부가 투신현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 가족측의 변호인과 의사가 함께 사체확인에 입회하는 것을 거부했었고 ▲ 당시 투신을 했다는 장소인 화장실이 구조상 도저히 투신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절대 투신자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崔교수의 동생이 당시 정보부 감찰실 직원으로 근무해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후 투신자살지점을 직접 가 보았으나 퍽자국 등 투신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73년 10월 16일 하오1시 45분崔교수와 함께 직접 정보부에 출두했던 동생 鍾善씨(43)는 3일 뒤인 19일 상오 7시 15분 정보부 당직실에서 상사인 李모 감찰과장으로부터 형의 사망소식을 듣는 순간 『돌아가신 현장을 봐야겠다』고 다그쳤으나 李과장은 『현장이 너무 비참해 안보여주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내려져 사체를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옮겨놓았다』고 만류했다는 것.

鍾善씨가 다시 『당신들 마음대로 처리하느냐, 꼭 현장을 가봐야겠다』고 외치자 강력히 제지하면서 오히려 『자살자의 사체는 가족입회없이 부검할 수 있으나 당신이 우리 부원이니 입회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鍾善씨는 『가족측 변호인과 의사들과 같이 입회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鍾善씨는 『정보부에서 나 혼자 입회해 줄 경우 거액의 보상금과 함께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며 명예회복은 물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회유를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鍾善씨는 또 정보부 간부들에게 『형의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와 수사기록 등을 확인해야겠다』고도 말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崔교수 가족들은 부검입회를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계속되던 중 鍾善씨가 투신지점을 직접 확인했던 결과를 두고 더욱 자살이 아니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

당시鍾善씨가 상사들과 얘기를 나누던 2층방과崔교수가 떨어졌다는 지점은 직선거리로 불과 20여m. 계단을 이용, 건물을 돌아가더라도 40여m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鍾善씨는 자신도 사용하던 화장실 아래의 사고지점을 가 봤으나 퍽자국 등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다.

더욱이 현장을 숨기기 위해 물로 닦아냈다면 초가을 새벽의 낮은 기온에다 응달진 곳인 점에 비추어 물기가 남아 있었을 것이나 한 점의 물기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崔교수 가족들은 동생 鍾善씨가 중앙정보부의 내부구조는 물론 근무수칙에 밝은 점을 들어 투신자살을 할 수 없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족들은 ▲ 외부인의 내부감시 및 불순분자의 침투를 막기 위해 정보부의 모든 출입구와 창문은 언제든 철저하게 잠그도록 되어있으며 ▲ 변소 유리창문은 가로 1m, 세로 1m 50cm 정도의 알루미늄제로 40kg 정도의 중량이므로崔교수가 도저히 창문을 열고 재빠르게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규정상 수사관이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이들을 제지하고 투신할 도리가 없다는 것.

따라서 『용변을 보다가 별안간 창틀에 올라서기에 한 수사관이 회유하고 한 수사관이 뒤로 살금살금 돌아가 다리를 잡는 순간 그대로 뛰어내렸다』는 정보부의 설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1m 62cm의 작고 뚱뚱한 몸집에 조사중이므로 허리띠를 풀어놓았을 상태인崔교수가 ▲ 소변을 보다가 창문의 잠금장치쪽으로 몸을 옮겨 ▲ 창문을 열고 ▲ 변기에 발을 모두 올린 뒤 ▲ 다시 창문턱에 올랐다가 ▲ 창밖을 향해 뛰어내리는 일련의 행동을 3-4m 옆에 수사관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崔鍾吉교수(당시 42세)는 지난 55년 서울法大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58년부터 62년까지 서독 퀄른大에 유학, 국제사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모교인 법대에서 시간강사를 맡았다.崔교수는 그 뒤 64년 전임강사, 65년 조교수, 그리고 사망하기 1년전인 72년 11월 교수로 임명됐다.

최교수가 외국에 체류한 것은 57년 5월 7일부터 62년 8월 15일까지 스위스 취히리大와 서독 퀄른大에 유학갔던 때와 70년 8월 3일부터 72년 8월 28일까지 美하버드大에 연구차 갔던 때 뿐으로 귀국당시 獨逸퀄른大교수 초청으로 잠깐 서독을 들렀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후배·동료교수들은崔교수가 정의감 때문에 법의 바른 집행을 강조했으며, 유신체제하인 당시의 정치현실을 종종 비판했다고 말한다.

崔교수의 3년 선배인 법대 裴載湜교수는 『15년 전인 73년 10월 25일崔교수가 간첩혐의 조사중 자살했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대부분의 교수는 이를 믿지 않았다』며 『崔교수는 평소 北韓에 대한 발언을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었기에 그가 간첩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손태규·이충재기자】

③ 한국일보 1988. 10. 19.

직접증거 소멸…眞相못밝혀

다시 迷宮에 빠진 崔교수 死因규명

崔鍾吉교수 사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사건 공소시효만료일인 1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사인을 규명치 못했고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자도 찾지 못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인은 두고두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崔교수 사인에 대한 의문은 사건발생 15년만인 지난 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대표 金勝勳신부)이『崔교수가 고문에 의해 숨겼다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하며 李厚洛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 사건 관련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검에 진정하면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사제단은 진정서에서崔교수가 고문에 의해 숨겼다는 증거로 ▲ 중앙정보부가 의사인 미망인을 비롯 가족과 변호인에게 사체를 확인시키지 않은 점 ▲ 투신현장을 공개하지 않은 점 ▲崔교수를 조사과가 아닌 공작과에서 조사한 점 ▲ 7층에서 뛰어내렸다는 발표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 정보부회보(42호)에서 나타난 두 수사관에 대한 차등책임 등을 들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 진정서가 접수되자 다음날인 7일 이 사건을 형사1부 金相洙부장검사에 배당, 10여일간 재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설사崔교수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해도 이 사건은 상해치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가 이미 80년 10월 18일자로 만료됐다』며『따라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수사나 관련자 처벌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진상조사차원에서 사인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趙準熙변호사)은 성명을 통해『사제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崔교수는 고문치사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15년)는 10월 18일까지므로 사실조사를 끝낸 뒤 관련자 처벌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발표해 18일은 1차적인 수사한계일로 굳혀졌다.

이 잠정시한인 18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한마디로『자살의 증거도 타살의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것.

검찰은 그 동안 사제단이 제출한 사건관련자 22명중 사망한 2명과 李厚洛씨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관계자를 소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으며 진정서를 낸 사제단의 金勝勳신부,崔鍾吉교수의 막내 동생 鍾善씨(43. 전중정감찰실 근무)를 불러 고문치사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지난 10일과 15일 검찰에 출두한崔鍾善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 정보부의 관행상 창문

등 모든 출입문을 잠근다는 사실 ▲ 수사관이 바로 옆에 지키고 서 있는 테도 창문에 뛰어 올라 잠긴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 사건직후 중앙정보부가 鍾善씨 자신에게 항구하도록 협박과 회유를 한 점 ▲ 투신장소에 흙자국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崔교수의 사인이 자살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崔씨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자살에 대해서도 타살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될만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중정감찰과장이던 李병정씨로부터『사건직후 투신했다는 현장에 가 보았으나 흙자국을 발견치 못했다』는 진술을 듣는 등 타살에 부합되는 진술도 일부 얻어냈으나 대부분 중정관련자들로부터 반대의 진술을 받았다는 것.

사건직후崔교수의 사체모습을 찍은 컬러사진도 확보했으나 사진상으로는崔교수의 두개골파열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밝혔다.

결국 검찰은 사건후 15년이 지나 모든 직접증거가 사라진 가운데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기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중앙정보부(현 안기부)내 사건 현장을 답사했으나 당시의 정황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 도움이 될만한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

당시 중정이 발표한崔교수의 간첩행위에 대한 부분도 사인만큼이나 확인할 수 없다. 중정의 당시발표는『崔교수가 간첩행위를 자백한 직후 자살했다』는 것이었으나 서명날인이나 자필진술서 등崔교수가 자백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검찰은 10여일간의 기간에 15년전의 문화진 사건에 대한 규명작업을 적극적으로 펴긴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비밀스럽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점이나 사건진상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李厚洛씨를 소환하지 않은 사실 등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최종 공소시효만료일에 자살도 타살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이 사건은 깊은 의문을 간직한 채 영구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④ 한국일보 1988. 10. 19.

崔교수 死因 영원히 迷宮으로

- 殺人罪도 어제 公訴시효 만료 -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서울大 법대 崔鍾吉교수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 공소시효(15년)만료일인 18일까지 사인을 규명치 못함으로써 사법처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지검 형사1부(金相洙부장검사)는 이날 중간조사결과를 발표, 「현재까지 수사결과 崔교수의 사망과 관련, 형사처벌할 아무런 단서나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공소시효만료일인 이날까지 崔교수의 동생 崔鍾善씨, 사제단의 金勝勳신부, 당시 중앙정보부관계자 12명, 부검의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金상현씨, 변사사건 지휘검사인 李彰雨씨등을 조사했으나 「崔교수가 타살됐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崔교수의 유족들이 주장하는 간첩조작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중정수사관은 崔교수가 간첩사실을 자백하고 자술서를 쓰기 전에 자살했다고 진술했으나 崔교수가 간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검의사 金씨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보관된 부검자료를 조사한 결과 崔교수의 직접사인은 심장파열과 頭蓋底(뒷머리아래부분)골절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검자료가 조작됐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락사의 징후로 보인다」는 부검의사 金씨의 진술과 「타살의 혼적은 없었다」는 지휘검사 李씨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지휘검사 李씨는 검찰에서 「서울지검공안부에 근무하던 당시 밤에 집으로 연락이 와 중정南山분청사로 가 추락현장에서 崔교수의 사체를 확인하고 두시간 뒤 퀄러사진을 찍고 부검에 착수했다」고 진술했다.

또 崔교수를 조사했던 중정조사관들은 「崔교수가 동베를린에 갔던 사실을 자백하고 안피우던 담배를 연거푸 2대 피운 뒤 화장실로 갔다」며 「화장실문 밖에서 보니 소변을 보고 나서 구역질을 하는 것 같아 잠시 시선을 밖으로 돌렸는데 그사이에 崔교수가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중정감찰과장 李모씨를 소환, 유족측과 대질신문을 벌여 사건 후 유족들을 협박 회유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했으나 양측의 진술이 팽팽히 맞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崔교수가 조사받던 중정南山분청사에 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화장실은 매우 비좁아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으며 崔교수가 조사받은 「합동신문 조사실」은 중정이 안기부로 개편되면서 구조가 변경돼버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초로 崔교수의 사체를 확인한 중정수사관의 소재를 추적했으나 이미 3년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崔교수의 부인 白慶子씨(43)등 가족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⑤ 한국일보 1988. 10. 20.

“사인규명 끝아닌 시작”

15년 집념안버린 崔鍾吉교수 가족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崔鍾吉교수사인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명쾌한 결론없이 발표되자 부인 白慶子씨(52)는 「진실을 밝히는 일을 계속하고 또 다른 의문도 제기하겠다」며 변함없는 집념을 내보였다.

이번 수사로 「간첩혐의」와 「투신자살」이라는 15년전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뚜렷한 물증이나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긴 세월 눈빛 마저 감추고 살아오며 노력한 대가라면 대가였다. 그러나 「남편이 고문으로 숨졌으며 간첩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白씨로선 검찰의 수사결과가 기대에 어긋났던 공소시효가 만료됐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죄가 없으니 금방 돌아오겠다』고 전화를 통해 남긴 崔교수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白씨의 컷가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다. 그날은 맹장수술로 친정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자신을 데리려 오기로 약속했던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보를 들었을 때도 『거기 들어가면 혹독하게 한다는데 비굴하지 않게 맞서다가 당했을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서울大 법대를 나와 29세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딴 수재와 의학도인 병원집 무남독녀의 결혼은 그당시 仁川의 대단한 화제였다. 결혼 10년째인 70년 1남 1녀와 함께 미국하버드대에 연구교수로 갔을 땐 행복의 절정을 맞은 시절이었다.

귀로에 독일에서 6개월 머물 때 崔교수가 「여기오니 한국보다 훨씬 대우를 잘해 준다』며 활짝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白씨는 이 기간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가 있었다는 정보부의 발표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간첩의 가족」이 겪은 시련은 가혹했다. 혼자서 살림을 꾸려가야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치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제대로 보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 길고긴 維新의 터널 끝에 찾아온 80년 봄 남편의 명예회복을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고 다시 7년을 기다렸다.

그동안 아들 光浚씨(25)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역시 아버지가 다니던 독일의 퀼른대로 유학을 갔고 딸 希晶양(22)도 벌써 대학 4년생이 됐다.

수사결과가 발표된 18일 저녁 白씨와 가족들은 明洞성당에서 미사를 올리며 崔교수의 원혼을 달했다.

『남편을 억울하게 숨지게 만든 관계자들이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겠다』는 白씨의 호소는 오열로 이어졌다.

(5) 일요신문

① 일요신문 1988. 10. 16.

“최종길교수 죽음 진상을 밝혀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성명통해 의문점제기

1974년 12월 21일자 「뉴욕타임스」는 ‘서울의 반정부세력이 신랄하고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년 전에 남한에서 뛰어난 한 교수가 한국중앙정보부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불가사의하게 죽었다. 비밀경찰은 그 교수가 자살했다고 말했으나 그의 가족은 고문으로 죽었다고 믿고 있다. 그 사건은 통제받은 한국의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보다 1년 전인 73년 10월 25일, 동아일보를 비롯한 석간신문들은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적발’이라는 기사로 일제히 최종길교수(서울법대, 당시 나이 41)의 죽음을 알렸다.

“중앙정보부는 25일 유럽을 거점으로 암약하던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 관련자 54명 가운데 총책인 이재원(41.네덜란드 거주) 부책 이재문(33.서독거주) 형제 등 3명은 미체포, 국내간첩 김장현(38. 경제과학심의회의분석관)등 3명은 구속(이중 1명은 구속후 자살), 동조자 고재원씨(건국대 교수) 등 17명은 불구속입건, 나머지 31명은 경고, 불문에 붙였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3명 중 서울법대교수인 최종길은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임을 자백, 여죄를 조사받던 중 화장실 창문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의 최초의 진상규명 움직임은 74년 12월 10일 명동성당 기도회 자리에서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일이기도 한 그날의 기도회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우리의 인권주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최종길교수는 고문치사되었다. 인권유린의 수부(首府) 중앙정보부 등은 마땅히 해체하고 인권유린을 인정하는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신 직후였던 당시의 살벌한 상황에서 밖으로 표출되지는 못했다.

지난 10월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승훈·오의순 신부)은 15년만에 다시 성명을 발표, 최종길교수의 사인이 조작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의 성명은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숨진 서울법대 최종길교수의 사인은 자살이 아니라 그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고문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살인”이라고 주장, 이후 락 당시 정보부장등 관련자 22명을 고발하는 한편, 관계당국은 최교수의 사인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제단은 사건 직후 중앙정보부가 사인을 조작, 은폐하고 최교수에 대한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서 조작 은폐 및 명예훼손의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인사 20여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제단이 밝힌 관련자 명단은 △ 이후락(중앙정보부장) △ 이창우(서울지검 검사·검시입회인) △ 오수창(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 김상현(동 법의학과장) △ 장송록(이사관·수사단장) △ 안홍용(중령·담당 공작과장) △ 손종호(감찰실장) △ 변형실 이외 당시 5국 10과 직원 전원(고문은 교대로 관여) 등이다. (직책은 사건 당시)

이처럼 최교수의 사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최교수의 친동생 최종선씨(45)가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서 최교수의 사인이 조작됐음을 밝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증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의사인 최교수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 및 변호인에게 사체를 확인시키지 않은 점 ▲ 투신현장을 공개하지 않은 점(최교수가 사망한 당일 사건현장에 갔던 최종선씨는 가까스로 투신했다는 현장에 가볼 수 있었는데 현장에는 핏자국이나 피를 물로 씻어낸 물자국도 없었다고 한다) ▲ 최교수에 대한 조사를 수사과가 아닌 공작과에서 했다는 점 ▲ 간첩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미 최교수가 연행되던 10월 16일 이전에 수사과에 의해 완전 종결되었고, 검찰송치를 위한 의견서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점(관련사건의 수사는 종결될 때까지 담당한 과(課)에서 하는 것이 관행) ▲ 화장실 구조상 그토록 빠른 시간 내에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는 점 ▲ 최교수 사망 직후 장송록 수사단장이 가족들에게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나는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왔더니 투신자살하셨다는 겁니다”라고 얼떨결에 고문한 사실을 시인한 점 ▲ 최교수의 자살이유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평양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자살”→“국내조직을 대라고 하자 이에 불응 투신자살”→“공작을 목적으로 공작금을 썼다는 증인이 나타나자 투신자살”로 끊임없이 횡설수설 번복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최교수가 간첩이었다면 어떻게 최교수의 친동생을 그후로도 계속 정보부내의 정보부라고 불리는 감찰실에 근무하게 했을까 하는 점이다.

【조용준기자】

② 일요신문 1988. 10. 16.

동생 최종선씨가 말하는 형의 죽음

당시 중정 감찰실 근무 74년 사제단에 기록 전달

감시피해 기록 남기려 정신병동 위장 입원

- 사망한 최종길교수와는 친형제간인가.

▲ 그렇다. 우리 형제는 모두 4남2녀로 6형제다. 최종길교수가 둘째이고 나는 막내다.

- 73년 사건 당시 최종선씨는 중앙정보부 감찰실 요원으로 정보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텐데 친형이 간첩혐의로 조사받으러 가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 사건 당시 나는 29세였다. 형님은 서울대교수라는 명예로운 직위를, 나는 또 국가기관의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졌다는데 점에서 국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의 국민이자 애국시민인 우리가 간첩 잡는 일에 협조를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임했다.

- 최교수가 조사를 받는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가.

▲ 2-3일동안의 처절한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형님의 죽음을 알고나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평화스러운 한 가정에서 갑자기 닥쳐온 비극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형님 개인, 형님 가족만의 사건이 아니라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일, 우리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 이번에 사제단에서 발표한 성명은 최종선씨의 기록이 증거자료로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에 의해 그런 기록을 남기고자 했는가.

▲ 당시 나의 신분상 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훗날을 위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당시 상황에서 그런 기록을 작성한다는 것이 가능했는가.

▲ 형님의 죽음을 접하고 난 후 나는 쇼크를 가장,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정신병동에 입원해야겠다는 착상은 솔제니친의 소설 「수용소 군도」에서 얻었다. 나는 마침 사건 직전에 그 소설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나의 존재를 정보부에서 감시하므로 감시가 불가능한 지역으로는 정신병동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감시와 통제는 쇠창살 밖까지만 가능하니까.

병원 레지던트로 있는 친구에게 펜과 노트를 부탁해서 보름동안 썼다. 이것을 나

중에 정서하고 정보부에 계속 근무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을 첨가했다.

- 이 기록을 사제단에게는 언제 넘겨주었는가.

▲ 정확하게 74년 12월18일 이었다. 그날 명동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사제단을 찾아가 나의 양심선언이라고 밝힌 다음 건네주었다.

- 최교수 사건 이후에도 계속 정보부에서 근무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는가.

▲ 81년 1월23일까지 7년반을 더 근무했다. 나는 지금도 형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내 인생의 제일순위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나에게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 검찰에서 한 진술은 어떤 내용인가.

▲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형님의 사망은 결코 투신자살에 의한 것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형님이 국가 반역자가 아니므로 명예가 꼭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상 2가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와 어떤 정황, 어떤 증인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술했다.

- 최교수가 살인을 당했다해도 오는 1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발생당시에는 구체적인 아무런 증거들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이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었음이 밝혀졌다. 형님의 경우는 이미 관계자료나 관계자가 모두 밝혀졌고 정보부 내부문서도 확실한 만큼 당국에서 밝히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쪽이나 당시 사건 관계자들이나 19일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19일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느님의 법에는 또한 하느님의 벌에는 공소시효란 없다. 이 사건을 가장 명예롭게 해결하는 일은 사건 관계자들이 스스로 사건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용준기자】

VII. 의문사문제 해결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법 안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1. 입법취지

그동안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 중 그 사인에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진상은 역사속에 매몰될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가 출현함과 발맞추어 더 이상 진실을 과거에 묻지 않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① 의문사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의(법 제2조)

② 대통령직속하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 3인씩 선출(법 제3조)

③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 고발, 영장청구요청, 재정신청여부 등을 결정(법 제4조)

④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요청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7조)

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법 제8조)

⑥ 위원회가 관할지방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관할지방 법원에게 신청하여야 함(법 제9조)

⑦ 사건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정(법 제10조).

⑧ 위원회는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를 검사 등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11조).

⑨ 검사 등이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할고등법원 등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함(법 제12조).

⑩ 자수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며, 내부정보제공자의 신변보호장치 마련(법 제13조, 제14조)

⑪ 이 법이 만료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법 제15조)

⑫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벌칙조항 마련(법 제16조)

3. 전문(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의문사한 자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의문사”라 함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통령은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3월내에 대통령 직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기타 위원회의 조직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직무범위)

위원회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
2. 고발, 영장청구 요청, 재정신청 여부의 결정
3.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사요청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5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조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 ② 위원중 5인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독립)

-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 및 경비)

위원의 보수 및 위원회의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사협조요청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검찰청장, 안기부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 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조사)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감정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영장청구요청)

-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당해 사건의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 ①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위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 3월마다 대통령에 그 사유를 보고 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처리)

-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자를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경우 '민족민주유공자의명예회복및예우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신청의 예외)

- ① 위원회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전에 이 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위원회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제1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이 법률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기간동안 전항의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제공자도 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기관에서는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의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공소시효의 예외)

- ① 이 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② 이 법 제2조의 규정된 의문사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이 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벌칙)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위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제1항, 제2항의 요청에 불응한 자.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 및 증언요구를 거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 안 2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

1. 입법 취지

1945. 8. 15. 해방이후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건별로는 명예회복 및 예우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예컨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9호, 10호에 규정된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에 관한 규정,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대부분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분들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법안의 제목에 관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민족민주”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민족민주유공자”라는 용어를 선택함
- 나. 민족민주유공자를 시기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 1945.8.15 이전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1945. 8. 15. 이후로 제한하였고 앞으로도 민족민주유공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기는 제한하지 하니함(제1조)
- 다. 민족민주운동의 정의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제2조1항)
- 라. 민족민주운동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라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지 아니하였다며 사망자에 한하여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제2조 2항 3호)
- 마. 의문사한 자도 포함시키되 다만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요청한 자에 한하여 포함시킴(제2조 2항 4호)
- 바. 유족의 범위, 등록 및 결정, 예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을 준용하기로 함(제3조,4조, 16조)
- 사. 보상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함
- 아.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통일에 역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선언적인 규정으로 그쳤고 위와같은 행위시 보상금지급금지 등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음(제7조)
- 자. 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유족대표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중 일부를 유족대표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제9조)
- 차.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도 협조하도록 하

였음(제10조)

- 카.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1조)
- 타. 요시찰인 명부작성등 불이익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었음(제12조, 21조 1항)
- 파.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였고 추진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미루었음(제14조)
- 하.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었음(제15조)
- 거. 보상금의 환수 등 보척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음
- 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 1조)

3.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 8. 15이후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었거나 민족민주운동에 공헌한 자(이하 “민족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민족민주운동”이란
2. 이 법에서 “민족민주 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8조의 규정에 의한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결정된 자를 말한다.
 - (1) 민족민주운동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 (2) 민족민주운동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3) 민족민주운동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자
 - (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6조 2항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

제3조(유족등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민족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를 적용한다.

제4조(등록 및 결정)

1.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족민주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조에 의한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제5조(보상원칙)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민족민주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반민족민주행위 금지 의무)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8조(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민족민주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에 민족민주 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민족민주유공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 나.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다. 민족민주유공자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라.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한 불이익행위의 판정 및 고발
 - 마.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사항
 - 바. 기타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가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검증 또는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명예회복**제11조(특별재심)**

1.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3. 재심관할법원은 재심이 청구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면이 있었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불이익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타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 요시찰인명부의 작성, 여권발급 절차에 있어서의 예외적 취급 규정 등 차별대우(이하 불이익 행위라 하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불이익 행위 여부의 판정등)

1.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불이익 행위를 당한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불이익 행위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불이익 행위의 판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불이익 행위로 인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념사업)

1. 정부는 위원회의 견의에 따라 민족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묘역성역화 사업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1항의 기념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1.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민족민주유공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서훈의 추천요청)

1. 위원회는 민족민주 유공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훈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로부터 서훈의 추천을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2조에 규정된 국민훈장이나 상훈법 제21조에 규정된 국민포장의 서훈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장 예우**제17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내지 제7장을 준용하되 제2조 제1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민족민주유공자는 “전몰군경”的 예에 따라,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민족민주유공자는 “전상군경”的 예에 따른다. 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보칙**제18조(보상금의 환수)**

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학자금(법 제 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학자금을 포함한다.) 법 제17조의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 (2) 보상을 받은 수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 등을 환수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을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
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
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별칙

제22조(별칙)

1. 제12조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0조 제2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로 신고를 한 자 또는 동법 제39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
류의 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